【특 집】

# 만주국의 조선인 : 디아스포라와 식민 사이

이 동 진*

차 례

1. 서론
2. '만주 문제'와 만주국
3. '조선인 문제'와 만주국
4. 만주국과 조선인
5. 결론

국문초록

만주는 20세기 전반에 동아시아의 발칸이었다. 이는 중국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대륙 세력인 러시아와 해양 세력인 일본이 만주에서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러일전쟁 이래 일본과 러시아는 남북으로 세력권을 구획하고 미국의 개입을 막았다. 그러다가 러시아혁명으로 러시아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대신에 미국의 세력이 강화되고, 중국 민족주의가 고양되어, 만주에서의 일본의 기득 권익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북벌'에 성공으로 중앙 정부의 세력이 만주에까지 미치려고 하자,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게 되자, 만주사변 이전까지 일본과 소련의 앞잡이라는 이유로 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숱한 박해를 받던 조선인의 지위가 상승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조선인은 법률상으로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이 조선인의 '국적 이탈'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본은 여전히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간주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선인은 일본의 만주 침략의 첨병이거나 구실이 되었다. 이것이 '조선인 문제'이다.

www.kci.go.kr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이 조선인 문제는 만주국 수립으로 인해서 변형되어 나타났다. 조선인으로서는 해결된 것이지만, 중국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주국은 법률상으로는 식민지가 아니라 국가라는 점에서, 만주국의 국민인 중국인으로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조선인보다 못한 지위에 놓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관동군과 조선총독부간에 만주의 조선인 지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그러나 만주국의 조선인도 내지의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징병제의 대상이 되면서는 만주의 조선인은 '만주와 일본의 일체화(민족협화와 일만일심일덕)'이나 '만주와 조선의 일체화(민족협화와 만선일여)'보다는 '일본과 조선의 일체화(내선일체)'의 규정을 더 강하게 받게 되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만주국의 조선인은 일본인과 유사한 지위('제2국민', '제2일본인')를 누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만주의 조선인은 '조선인 문제'가 만주의 지정학('만주 문제')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디아스포라였을 뿐만 아니라 '식민'의 요소도 포함하게 되었다.

주제어 : 만주 문제, 조선인 문제, 만주국, 조선인, 민족협화, 내선일체, 이중적 식민화

## 1. 서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 만주는 동아시아의 발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만주가 유럽에서의 발칸과 마찬가지로 열강의 세력이 충돌하는 '화약고'였음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유럽의 발칸과 동북아시아의 만주는 지정학적인 상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발칸의 경우는 러시아의 남하, 이에 대한 영국의 저지(크리미아전쟁), 다시 독일의 팽창(제1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였다. 만주를 발칸과 비교하면 독일에 해당되는 세력이 일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 의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듯이 일본에 의해서 '만주사변(15년전쟁)'이 발생했다. 그러나 발칸과 만주가 다른 점은 발칸은 1990년대에 다시 보스니아 내전 등으로 여전히 화약고로 남아 있지만, 만주는 '한국 전쟁' 이후에는 더 이상 발칸이라고 할 수 없다. 만주는 중국의 영토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만주에는 '민족 문제'가 남아 있지 않

www.kci.go.kr

다.[1)]

이 글은 '만주 문제'의 한 부분이 되는 '조선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조선인 문제가 만주국 조선인의 시민권을 어떻게 결정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문제 의식은 만주의 조선인을 식민지 조선 문제의 연장으로 보는, 다시 말하면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만주국 조선인은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국 신민이라는 법적 지위로 인해서 일본인의 신분(의 일부)를 누렸다는 점에서, '식민'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으로(de jure) 만주국은 국가였고 만주의 조선인은 일본인이었다. 따라서 만주국이 국가라는 점에서 만주인(중국인)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만주국의 조선인도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조선인은 일본인이 누리는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de facto) 만주국은 일본 관동군의 지배하에 있는 준식민지였고, 식민지 조선인이 식민지종주국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는 없었다. 만주인으로서는 일본인이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조선인이 자신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만주국 수립 이전만 하더라도 조선인은 중국인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왜 만주국 수립으로 인해서 조선인이 갑자기 그 수혜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관동군의 만주국 통치에서 하나의 딜레마를 나타났다. 일본은 일본과 만주국의 '특수관계'를 '일만일체화(一德一心)'라는 말로 나타내고, 조선과

1)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화약고가 '만주'에서 '북한'으로 전이되었다. 다시 말하면 '북한 문제'가 '만주 문제'를 대체한 것이다. "1930년대 만주국의 지정학적 핵심 논점들을 맴돌던 이러한 모순점들-중국과 일본의 민족주의 대결, 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과 미국의 세계적 제국 헤게모니의 고집 사이의 갈등, 일본 민족 정체성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모순-은 오늘날 북한에 집중된다. 1930년대에 '싸움터(cockpit)'로도 불렸던 문제지역은 두만강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간 것이다…. 만주국이 1930년대 동아시아 신질서의 중심축이었다면, 북한은 21세기에 미국이 그 제국주의적 질서를 강요하고 유지하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수단이다." McCormic, Gavan, 2004, "Community and Identity in Northeast Asia : 1930s and Today", 만주학회 ·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국제학술대회, 129쪽, 136쪽.

만주국의 관계를 '선만동등화(一如)'라는 말로 나타냈다. 두 경우에 조선은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전자에서는 '일본' 속에 용해되어 있고, 후자에서는 '조선'으로 돌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은 일본의 한 지역이기도 하고, 식민지이기도 했다. 관동군은 만주국 통치를 위해서 '민족(5족)협화'를 내세웠고, 조선총독부는 조선 통치를 위해서 '내선일체'를 내세웠다. 이 두 통치 방침은 시차를 두고 진행되었다. '민족협화'가 먼저였다. 민족협화는 만주국을 구성하는 일본족, 조선족, 한족, 만주족, 몽골족이 민족통합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인데, 만주국이 법적인 국가인한 만주인을 식민지인으로 취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게 된 정치적 수사(만주인에 대한 회유)였다.

일본은 '민족협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치외법권'을 철폐한 해에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여기서 중국은 만주와 내몽골이 아닌 중국 관내를 지칭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주국과 조선은 '병참기지'로서 중요하게 되었다. 전쟁이 확대되어감에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인의 협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족과 조선족의 동일화(내선일체)'가 주창되었다. 이제 조선인은 만주인과는 다르게 '창씨개명'을 하고, '지원병'을 거쳐 '징병'의 대상으로까지 되었다. 이 과정은 조선인이 '강제 동원'을 당하는 과정이었지만, 그 희생의 대가로 재만조선인은 점차 '2등국민'이 되어야 했다.

이 글에서는 재만조선인의 시민권이 '만주 문제'와 '조선인 문제'라는 구조적인 틀에 의해서 규정되었으며, 재만조선인의 '2등국민' 지위는 조선인의 전쟁 동원이라는 일본의 정책의 산물로 인한 것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은 '만주 문제'를 주로 전쟁, 철도, 이민이라는 세 가지 계기를 통해서 살펴본다. 제3장은 '만주 문제'의 일부로서 '조선인 문제'를 토지소유권과 국적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4장은 만주 문제와 조선인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만주국이 수립된 후 조선인의 시민권이 어떻게 변동되었는가를 '조선인 개척민'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www.kci.go.kr

## 2. '만주 문제'와 만주국

'만주 문제'는 1860년 북경조약 이후에 출현했다. 북경조약으로 만주에서 중국과 제정러시아의 국경선이 확정되었고, 우장(영구)이 개항지로 되었다.[2] 이렇게 해서 남부에서는 해양으로부터 영국이, 만주의 북부에서는 대륙으로부터 제정러시아가 만주를 에워쌌다. 제정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더 직접적이고 심각하였으므로,[3] 청은 봉금 정책에서 이민실변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곧 대부분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만주가 개척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어서 일본이 류큐를 병합하고 대만에 출병하는 등 해양으로부터의 또 하나의 위협 세력으로 다가왔다. 중국과 일본은 조선에서 충돌했다('청일전쟁'). 이 전쟁은 서해에서의 해전과 북부 조선(평양)을 거쳐 만주로까지 육전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전쟁의 결과 일본은 대만과 함께 요동반도를 할양받음으로 해서 만주로 침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일본이 요동반도를 할양받은 것에 대해서는 영국이 반발할 수도 있었지만 영국은 이를 수용한 대신에 러시아가 반발했다.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이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4] 이제 만주를 둘러싼 충돌의 당사자가 일본과 러시아로 전이되었으며 영국

2) 원래는 우장을 개항지로 하였으나 요하의 물길이 바뀌어 우장에서 90리 떨어진 영구가 요하와 바다가 연결되는 지점으로 되자, 영국이 영구를 우장으로 해석하고 영사관을 설립하였다. 이어서 러시아도 영구에 영사관을 설립하였다. 일본은 1876년에 영사관을 설립하였다. 이로부터 일본인이 관원, 유학생, 상인 등으로 만주에 거주하게 되었다. 李澍田, 1991, 『中國東北通史』, 長春 : 吉林文史出版社, 455~456쪽.

3) 제정러시아의 위협은 만주뿐만 아니라 신장에서도 발생했다('이리 문제'). 1864년에 발생한 '이리사건'이 '이리조약'으로 국경선이 획정되면서 1884년에 이 지역에 신강성을 설립하고, 이리장군 외에 순무를 임명하여 '藩部'에서 '內地(民政, 行省)' 체제로 전환하였다.

4) 일본은 요동반도를 퇴환하는 대신에 금주의 할양을 요구하다가, 다시 은 1억량 배상을 다시 요구했지만 결국 3천만양으로 감액하였다. 이 조약의 명칭은 <봉천성남변지방퇴환조약(요남교수조약)>이었다(李澍田, 앞의 책, 484쪽). 러시아 또한 열강의 강요에 의해 조약을 개정한 적이 있었다. 러시아는 제6차 러시아-터키전쟁(제2차동방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1878년 베를린조약에서 조약 개정을 강요받았으며, 청과 체결한 1879년 리바디아조약도 청이 영국과 프랑스의 중개로 1881년 페테르부르크조약(통칭 이리조약)을 체결하여 리바디아조약을 개정하였다. 러시아는 이리 지방을 청에 반환하고, 대신에 이리지방의 일부와 자이산 노르 지방을 할양받고 90만루블의 배상금을 받았다.

은 일본과 동맹을 맺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했다.[5] 러시아는 요동반도 남단(대련과 여순)을 조차하고 동청(東省)철도의 지선을 대련까지 연장하였다. 일본이 반환한 요동반도가 사실상 러시아에게 돌아간 것이다.

러시아는 1900년 의화단 사건을 이용해서 10만여 명의 군대로 만주를 점령했다. 1902년 <동3성교수조약>을 체결하여 1년반 내에 철병을 약속하였지만 동년 12월에 철병을 잠시 철병을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① 러시아가 돌려준 땅을 다른 나라에 양도할 수 없다. ② 몽고의 현행 조직 체제를 고치지 않는다. ③ 만주를 다른 나라에 통상지(商埠地)로 개방할 수 없다. ④ 중국북부사무는 러시아인이 감독한다. 곧 러시아는 만주뿐만 아니라 몽고를 포함한 중국 북부 지방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1903년에는 동청철도를 개통시켰다. 시간이 갈수록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우위가 확고해 질 것이었다. 이에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1905년 포츠머드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은 조선과 만주남부를 세력권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만주북부(와 외몽골)는 여전히 러시아의 세력권에 속했다. 미국이 철도의 중립화를 매개로 해서 만주의 문호개방을 요구해 옴에 따라서 일본과 러시아는 1907년과 1910년 두 차례 협약을 맺고 만주의 '현상 유지(문호 폐쇄)' 정책을 추구했다.

일본은 '간도 문제'를 이용해서 만주를 지배하는 데 관건이 되는 철도에 대한 지배와 '간도'의 조선인에 대한 치외법권을 가졌다. 일본은 1909년에 <간도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안봉(안동－봉천)선'과 '길회(길림－회령)선' 철도 부설권을 취득했다.[6] 이미 전쟁 중에 부설되고 있었던 안봉선이 곧 개통되어 일본은 부산에서 만주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가지게 되었다.

---

5) 이미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1885년에서 1887년까지 약 2년간 영국은 조선의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일이 있었다. 1885년과 1886년에 조선 정부에서는 러시아와의 비밀조약 체결 움직임이 있었다.

6) 원래의 '동3성 6안'은 신법철도 부설권, 대석교－연구 지선, 경봉선 연장, 무순·연대 탄광 채굴권, 안봉선 연선의 광무, 간도 문제 등이었다.

www.kci.go.kr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는 중요한 수단이 철도였다. 이러한 지배 방식은 이미 러시아가 동청철도를 부설할 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러시아는 철도관리권과 함께 군대주둔권, 행정권, 경찰권, 사법권 등을 포함하는 철도부속지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철도부속지의 관리권은 조계의 관리권을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국책회사인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을 통해서 만주에서의 자본 투자－철도 경영과 관련되는 각종 산업에 대한 투자－를 주도했다.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취득한 관동주와 만철부속지와 함께 다시 만철이 부설하는 지선(차관철도, 만철의 '培養線')과 만철이 경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남만주에서의 이익을 독점하려고 했다. 이 이익 추구 과정은 당연히 일본과 중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었지만, 또한 중앙과 지방(봉천 군벌)의 이익이 또한 충돌할 수도 있었다.

1915년에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21개조'를 요구했는데 핵심적인 사안(제2항, 곧 <남만주동몽골조약(이하 만몽조약)>)은 '만주(와 동몽골) 문제'였다. 일본은 만주남부와 동몽골에 대해서 '토지 상조권'을 가졌다. 이 토지 상조권 취득은 조선인을 포함한 일본인(사실상 조선인)의 농업 이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일본의 영사관이 만주에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제 관동주와 만철부속지, 그리고 간도에 더해서 만주남부와 동몽골 전체를 세력권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현지에서 이 조약상의 권리는 사실상 관철되지 못하였다. 지방 정부는 일본인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자에 대해서 '국토도매죄'를 적용한다고 했다. 도시에서는 만철부속지라는 교두보가 있었지만 농촌에서는 간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교두보가 없었다. 다만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조선인 농민이었다. 만주의 조선인은 만철부속지와 간도의 극소수 조선인을 제외하면 절대 부분이 농민이었다. 이들은 조선인 농민은 주로 간도와 동변도, 그리고 만철부속지 인근, 간도와 가까운 흑룡강성 등지에서 농업에 종사했다. 조선인은 특히 만주에서 논 농사를 개척했다. 논 농사는 밭 농사보다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조선인 농민들은 논 농사에 종사하였다.

www.kci.go.kr

1907년에 경봉철도(북경－봉천) 전 구간이 개통된 후,[7] 만주의 철도는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경봉철도(봉천), 일본이 관리하는 만철(대련과 장춘), 러시아가 관리하는 북철(하얼빈)의 세 철도로 분절되어 세 철도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8] 1910년대 후반은 일본이 차관철도의 형태로 만철의 철도망 확충('만철 培養路') 건설을 추진했다. 1917년에 길장철로 차관계약, 1918년 길회철로 차관예비계약과 만몽 4철로 차관예비계약(장춘－조남, 조남－열하 등)을 체결하였다.[9] 그런데 1920년대가 되면 중국이 철도 경쟁을 주도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배경 위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전승국으로서 미국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으로의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충돌을 하게 되었다. 1921년에 개최된 워싱턴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주장하는 '문호 개방'과 '영토 보전' 원칙이 인정되었다. 이는 만주에서의 일본의 더 이상의 세력권화가 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배경은 1917년에 발생한 '러시아 혁명'이었다. 일본이 러시아혁명 간섭군으로 가장 많은 군대를 시베리아에 파견하였지만, 결국 제정 러시아의 대부분의 판도를 소비에트연방이 계승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사정에서도 변동이 발생했다. 남방의 국민당이 공산당과의 합작－소련의 지원－을 배경으로 해서, '국민혁명－북벌'이 추진된 것이다. 국민당이 '상해 쿠데타'를 통해서 공산당을 숙청한 후에는 반공을 표방했던 장작림의 '봉계 군벌'을 계승한 장학량이 더 이상 국민당에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더욱이 '북벌(통일)'로 인해서 만주가 중국 내지의 연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1928년 '제남사변', '장작림 폭사사건'을 일으켰고, 이해 말에 장학량이 만주의 국민정부 편입('東北易幟')을 선언했다. 장학량 정권이 국민정부에 편입하게 됨에 따라 '국민 혁명'의 자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과 소련의 만주 지배에 대한 자

7) 안봉철도부설권을 인정받으면서 신봉철도(신민－봉천)를 중국에 넘겨주었다. 중국은 신봉철도를 획득하여 경봉철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
8) 경봉철도는 849.39킬로미터, 동청철도는 1,700킬로미터, 남만주철도는 약 1,100킬로미터였다.
9) 何瑜・華立, 1995,『國恥備忘錄-中國近代史上的不平等條約』北京教育出版社, 461쪽.

주권의 강화로 나타났다.

중국정부는 이미 1920년에 러시아로부터 철도부속지의 관리권을 회수하였으며, 1924년 소련과 국교를 체결하면서 중동철도에 대한 공동관리권을 획득하였다. 1924년에 장작림에 의해서 설립된 동삼성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철의 수송항인 대련항에 대항할 수 있는 호로도항 건설과 이와 연계되는 철도망 건설을 추진하였다. 주요한 철도는 동부의 심해(심양－해룡)철도와 길해(길림－해룡)철도, 서부의 조앙(조남－앙앙계)철도와 앙제(앙앙계－치치하얼) 철도 등이었다. 동부 간선 철도는 1928년과 1929년에 각각 개통되었으며, 접궤되어 심길(심양－길림)철로가 되었다. 1928년 12월에는 앙제철로가 완공되어, 북경에서 심양을 거쳐 길림과 치치하얼까지 연결되게 되었다. 만철은 동부와 서부의 평행선 부설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1912년에 개통된 길장(장춘－길림)철도를 연장하여 길회(길림－회령)철도를 부설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여, 1928년 10월에 길돈(길림－돈화)철로를 개통시켰다.

한편 장학량 지방 정권은 1929년에는 중동철도 회수를 시도하였다가 소련과 군사적 충돌 끝에 물러섰다('중동로 사건'). 철도 정책에서 장학량 정권이 직접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민중들의 자주권 강화 지지 운동('국민 외교')을 배경으로 해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중국의 공세적인 철도 정책은 만철에 위기감을 주었다. '만몽 5개 철도 조약'에도 불구하고, 결국 '철도권수회(保路)운동'으로 인해서 길회선 부설이 좌절된 것이 그 단적인 예였다. 1920년대 후반 경제공황이 닥치면서 만철의 '경제적 투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철도 문제(만철의 철도 지배)'를 완전히 해결하고 '2항2선(대련과 안봉선과 같이 청진과 길회선)'을 실현함으로써 만주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자 했다.[10] 그 해결책이 관동군에 의해서 만주 점령, 그리고 만주국 수립으로 나타났다.

1932년 4월 관동군사령관과 만철총재 사이에 '철도, 항만, 하천의 위탁경영 및 신설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같은 해 8월 관동군사령관과 만주

www.kci.go.kr

10) 길회선 문제는 1933년에 경도(신경－도문)선의 개통으로 귀착되었다.

국 정부 사이에 다시 '철도, 항만, 항공로 등의 관리 및 선로의 부설, 관리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1933년 2월에는 만주국 정부와 만철 사이에 위탁 경영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만주국의 국유철도(항만, 하천과 함께)를 만철이 위탁 경영하게 되었다.[11]

일본은 소련과의 전쟁을 대비하면서 주로 국방의 목적을 위해서 철도 노선을 확장해 갔다. 1933년에는 종래의 숙원 사업이었던 길회철도를 경도철도(신경－도문)라는 형태로 부설하였으며,[12] 북철에 대항하는 형태로 1935년 목도선(목단강－도문)을 개통하고, 1936년에 도가선(도문－가목사)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1935년에 소련정부가 북만철도를 만주국(사실상 일본)에 매각하였다. 이는 곧 만철의 북철 포위가 성공을 거두었음을 뜻하였다.[13]

만철은 또한 빈흑선(하얼빈－흑하), 수녕선 등을 부설하였다. 동부개발('북변진흥계획')과 함께 또 다른 오지인 서북부지역(몽골과의 국경지대)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항일무장세력이 활동 중이었던 동변도 오지도 개발되었는데, 곧 동변도개발계획('동변도부흥계획')의 일환으로서 매집선(매하구－집안)이 부설되었다.[14]

전쟁과 철도는 또한 이민을 불러왔다. 북경조약으로 제정러시아가 만주와 국경을 접하게 되자 만주는 '폐쇄(封禁) 정책'에서 '개방(開禁, 移民實邊)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광서연간(1875~1908년)에 만주는 모두 개방되었다

11) 高橋泰隆, 1995,『日本植民地鐵道史論』』東京：日本經濟評論社, 346~347쪽; 김지환, 2005,「간도협약과 일본의 길회철도 부설」,『중국사연구』34, 265~267쪽.

12) 이로써 만철부속지와 함께 간도를 개발하여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는(러시아의 북만철도를 포위하는)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2항2선' 정책이 실현되었다. 2항은 대련과 청진이었고 2선은 만철과 길회철도였다.

13) 소련은 1928년부터 제1차5개년 계획에 들어가면서 서시베리아 개발에 주력하고 극동시베리아를 수비범위로 하는 특별극동군을 정비해갔다. 이 특별극동군이 1929년 중동철로를 둘러싼 중국과의 장학량 정권과의 분쟁에서 압도적 군사력을 과시했다. 소련은 만주사변 직후인 1932년 4월에 특별극동군을 증강하기 시작하였고, 4월에는 극동해군을 편성하였다가, 1935년에는 태평양함대로 개편했다. 그리고 1935년 12월에는 중국과 국교를 회복하고 1937년에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했다. 山實信一, 1993,『キメラ：滿洲國の肖像』, 中央公論社, 43쪽, 46쪽.

14) 1938년 1월 통집철로(통화－집안) 공사로 11도구와 12도구를 지나는 노령 터널 5.5킬로미터를 개통하였다.

www.kci.go.kr

(전면 개방은 1904년에 이루어졌다). 1861년과 1897년을 비교하면 봉천성은 인구가 282.7만 명에서 495.7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길림성은 33만 명에서 77.9만 명으로 증가했다. 곧 봉천성과 길림성의 인구를 비교하면 1861년에는 봉천성 인구가 8.6배 더 많았던 것이 1897년에는 6.4배 더 많았다. 1903년 7월 동성철로 개통 당시 흑룡강성의 인구는 40.8만 명이었는데, 1908년에는 1,455657명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인구는 철로로 수송되어 와서 철로 연선에 정착하게 된 이민자들이었다.[15] 1911년 당시 동삼성의 킬로미터당 인구 인구밀도를 보면 봉천성이 74.21명, 길림성이 29.62명, 흑룡강성이 6.95명이었다.[16] 제정러시아와 일본도 만주에 이민을 보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반면에 중국은 1920년대까지 이 지역에 많은 이민을 보내는 데 성공했다.

철도가 부설되기 전에도 산동 등지에서 만주로의 불법 이민이 있었지만 개방 정책과 철도 부설로 인해서 만주 이민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만주로의 이민 급증을 '闖關東'이라고 한다). 1923년에 실시된 중국 郵務局 조사에 의하면 중국 내지와 변경 지역의 1方哩 당 인구 밀도를 비교해 보면 내지(4억 1,301여만 명)가 206.0명, 만주(2,200여만 명)가 60.7명, 티벳 및 청해(650만 명)가 14.0명, 신강(120만 명)이 2.2명, 몽골(260만 명)이 1.6명이었다.[17] 인구밀도에서 보아도 만주는 다른 변경 지역과는 달리 이미 내지로 편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도 부설 이후에 만주의 인구가 급증했다. 이는 관내의 인구가 철도를 이용해서 만주로 중국 이민자가 급증했다. 1919년에 간행된 <최신만주지지>에 따르면 만주의 인구는 1,500만 명이었는데, 1928년에는 3,200만 명으로 추정되었다.[18] 10년 사이에 인구가 2배 이상(1,20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15) 曲曉范, 2001,『近代東北城市的歷史變遷』, 東北師範大學出版社, 46쪽.
16) 趙文林・謝淑君, 1988,『中國移民史』, 人民出版社, 475쪽.
17) 滿鐵調査課, 1931,『滿洲に於ける邦人の現況(下)』, 5쪽
18) 관동주와 만철부속지의 인구를 보면 1918년 7월 현재 중국인 61만 명, 일본인 12만 명, 조선인 1.5만 명, 기타 외국인 365명, 러시아인은 하얼빈의 5~6만 명을 포함하여 북만주에 10만 명으로 추계되었다.

철도 부설 후인 1919년에서 1928년까지의 인구 증가 상황을 보면, 봉천성(1928년부터는 요녕성)이 1,015만 명에서 1,447만 명으로, 길림성이 422만 명에서 859만 명으로, 흑룡강성이 146만 명에서 496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1928년에 신설된 열하성이 450만 명이었다. 철도가 부설된 후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척민'으로 인해서 흑룡강성의 인구 증가는 1930년대에 더욱 급증하였다.[19]

## 3. '조선인 문제'와 만주국

만주 문제의 하위 문제로 '재만조선인 문제(이하 조선인 문제)'가 있었다.[20] 만주의 개척 과정에서 조선인 이민이 발생했고, 이 조선인 이민의 시민권과 국적을 둘러싸고 '조선인 문제'가 발했다. 조선인 문제는 처음에는 '간도 문제'로 나타났다. '거문도 사건'이 발생한 시기인 1885년과 1887년에 조선과 청이 '감계 회담'을 진행했다. 이 감계 회담은 백두산 지역에 국한되는 영토 문제를 낳았지만 이 문제가 간도 문제로 발전한 것은 1899년 조청통상조약, 1904년의 한청변계선후장정에도 불구하고, 1907년 일본이 용정촌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면서부터였다.[21] 이 간도 문제는 1909년 간도협약('도문

19) 목도선의 도문-녹도 구간은 1934년 11월에 준공되었고, 녹도-영안 구간은 1935년 1월에 준공되었다. 1930년 5월에 영안현의 조선인은 3,088명이었는데, 1933년에 970호, 5,820명이었으며, 1934년 9월에는 1,324호(51개 촌에 분포), 6,932명에 달하였으며, 1935년에는 2,422호, 12,767명으로 급증하였다. 남영선, 「영안의 조선족」, 흑룡강성작가협회(daum.cafe/hljskorean, 검색일, 2012. 6. 25).

20) '재만조선인 문제'와는 별도로 또한 '조선 문제'가 있었고, 이는 '선만 문제'를 구성했다. 여기서 조선 문제라는 것은 조선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주로 군부의 문제 의식을 말한다. 조선인 독립운동과 소련과 연결되는 사회주의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만주에 대한 치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만조선인 문제'는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일본제국의 '위신'과도 관련되었다. 일본 군부로서는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자급자족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주(나아가 중국)의 자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였지만,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는 재만조선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선내지의 조선인에 대한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山實信一, 앞의 책, 31~42쪽.

강중조변무조관')의 체결로 간도 조선인의 시민권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1915년에는 '만몽조약'으로 간도가 남만주의 범위에 속하는가 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간도의 조선인은 '치외법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간도의 조선인은 토지 소유권과 함께 조선에 쌀을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만몽조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 정부는 남만주에서의 일본인에게 실제적인 '토지 상조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워싱턴 조약 과정에서도 '만몽조약'을 폐기하려고 했다.

만주의 조선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만주의 조선인이 중국에 동화되지 않고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만주의 일부가 조선의 연장처럼 되었던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이상할 것이다. 대부분의 조선인은 조선인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이 조선인 마을의 존재는 조선인 학교를, 심지어는 조선인 군대와 조선인 정부를 필요로 했다. 사실상 중국의 행정이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직 만주가 완전한 개척지가 되지 못한 데 있었다. 조선인은 '자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위'가 필요했다.

만주에서 조선인은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끼여 있었다. 일본은 모든 조선인 – 중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인조차도 – 을 자신의 지배 대상으로 간주했고 중국 또한 적어도 관동주와 만철부속지, 그리고 상부지 이외에 있는 모든 조선인 – 간도의 잡거지에 거주하는 조선인조차 – 을 자신의 지배 대상으로 간주했다. 일본이 관동주와 만철부속지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조선인 – 대부분의 조선인은 이 지역에서 거주했다 – 을 통치하는 기구는 영사관(영사경찰)이었다. 이 기구는 중국의 통치 기구에 비하면 빈약했으나 집중되어 있었다. 일본은 관동주와 만철부속지에 군대(관동군)을 가지고 있었고 만주에서 가까운 조선에 또한 군대(조선군)을 가지고 있었다. 이 군대는 '만주사변'

www.kci.go.kr

21) 1902년 이범윤이 간도시찰원(1903년 간도관리사)로 파견되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장력은 '사포대'로 국가기관이 아니었다.

에서 증명되었듯이 만주의 중국 군대를 압도할 수 있는 무력이었다.

조선인은 중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서 완전한 중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간도의 경우는 사실상 조선인 자치－선출직의 대부분을 조선인이 차지할 것이다－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은 중국의 법역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것으로서 실제 조선인 마을이 누리고 있는 자치를 잃을 염려가 있었다.

그리고 일본 국적을 가진다는 것이 반드시 일본의 탄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또한 조선인 '보호'를 할 수 있었다. 그것이 '영사 업무'였다. 일본은 영사경찰까지 주둔시키고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사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만주의 조선인의 경우에는 만철의 보조와 조선총독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조선총독부의 경우에는 조선인 학교와 서당에 대한 보조, 의료 시설의 지원, 농업 경영 자금의 대출 등의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을 설치했다. 그리고 조선인이 자치를 할 수 있는 '조선인 민회'를 영사관의 하부 시설로 설립했다. 이들은 물론 친일 세력이었고 중국 정부와는 충돌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친일 세력의 부식 자체가 일본의 만주 침략의 일환이었다.

민족주의 세력은 대체로 중국 정부와 우호적이었다. 이들은 다시 개화파와 수구파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전자는 중국국적 취득을 들였던 데 반해서 후자는 중국국적 취득에는 반대했다. 중국국적 취득이 문화적으로는 '중국 복장'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유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다. 그리고 중국이 공화주의가 된 이후에는 중국과 조선(복벽 대상으로서의 조선)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졌다. 수구파는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거의 영향력을 잃게 되지만, 대신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중국 혁명'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이 중국 혁명 참가는 혁명의 대상인 중국 정부(북경정부나 남경정부)와 충돌하였다.

이러한 만주의 조선인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중국 지방 당국은 조선인 이민을 통제(구축)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 정책적 전환의 배경에는 소

www.kci.go.kr

련, 일본, 중국 사이의 힘의 균형의 변화가 놓여 있었다. 소련이 만주에서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남방의 혁명 정권이 통일에 성공하고 만주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복속함에 따라서, 그리고 중국 민중의 민족주의 운동이 발전함에 따라서, 중국의 대외 정책이 강경 노선으로 치달았으며, 일본 또한 현상 타개 정책－만주 적극주의－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만주 문제'의 변화는 '조선인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다.

조선인 내부에서 친중과 친일이 분열하고, 다시 친중 중에서 친국민당, 친공산당(친소련)이 분열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열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크게는 간도와 간도 이외 지역이, 다시 간도 이외 지역에서는 봉천성 지역과 길림성・흑룡강성 지역이, 또는 만철부속지와 그 외 지역에서의 조선인의 시민권이 달랐고, 이에 따라 조선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간도 지역을 보자. 간도 지역은 일본영사관이 가장 집중해 있는 지역으로 조선인 민회가 가장 발전했다. 이 조선인 민회 운동은 간도에서의 조선인의 지위를 반영했다. 다시 말하면 간도에서 조선인은 일본 영사관의 '보호'를 받아서 시민권의 대부분을 누릴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토지 소유권을 보자. 간도 4현에서의 조선인 토지 소유비를 보면, 1924년에 48%였던 것이 1928년에는 55%, 1932년에는 60.2%로 증가했다(동아경제조사국, 동아경제조사국, 간도문제의 경위, 1931 : 6 ; 조선일보 1932. 2. 27, 이훈구, 329~330).[22] 간도가 사회주의 운동의 본거지가 된 데에는 이와 같이 민족 모순이 아니라 계급 모순－조선인 내부를 포함해서－이 중요했던 사정과 관련이 있었다.

다음으로 동변도(서간도) 지역을 보자. 서간도 지역은 조선인 민족주의 운동의 본거지였다. 이 지역에서 조선인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대부분이 밭 농사 지역이어서, 조선인은 소작인으로서 생활했다. 이곳은 산지여서 마적의 위협도 더 많았고, 지방 당국의 수탈도 더 많았다. 통화영사

www.kci.go.kr

22) 1932년 현재 간도 각 현의 조선인 토지비율을 보면 연길현이 57.0%, 화룡현이 80.0%, 왕청현이 54.0%, 혼춘현이 48.0%에 달하였다.

분이 설립되었지만 임강영사분관 설립은 저지를 당하였다. 미쓰야 협정에 의해서 조선인은 중국 당국의 치안 대상이었다. 중국 당국은 조선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탄압하려고 했다. 일본의 '보호'도 받지 않았다. 조선인은 '보호'를 위해서 자치와 자위를 필요로 했다. 간도에서와 같이 '폭동'을 일으키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지방 당국과 충돌할 일도 거의 없었다.[23]

만주의 조선인 문제는 조선인의 국적 문제로 수렴되어 나타났다. 대한제국기의 국적 규정에서는 국적 이탈을 인정하지 않았다. 통감부간도파출소가 공포한 규정에서도 한국 신민의 국적 이탈을 인정하지 않았다.[24] 1909년에 청이 제정한 <국적조례>는 귀화(입적) 조건으로 거주 연한(만 10년 이상)과 함께 본국국적의 상실을 규정하였다. 1912년에 제정된 중화민국 국적법은 국적조례를 계승하여 국적 취득 요건을 10년 이상 거주하고, 본국적을 이탈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1915년 11월 일본공사가 중국 외교총장에게 보낸 각서에서 "신조약(만몽조약) 체결에 의해 조선인이라고 해도 일본국 신민인 이상 '간도협약'의 규정에 관계없이 '만몽조약'의 규정에 따라 모두 동 지방에 거주 왕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중국 정부는 동 지방의 조선인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에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조선인의 귀화를 권장하면서 귀화인데 대한 권리를 제고해 주고 귀화하지 않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강제로 추방하는 등의 정책을 전개하였다.[25]

---

23)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연구로서, 재만조선인 사회를 중북만의 남선미작이민이 형성한 사회, 간도지방의 북선인 사회, 동변도지방의 북선인 사회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의 사회적 처지－토지소유관계를 핵으로 하는 생산관계－가 달랐음을 설명하고, 나아가 이에 따라서 정치적 행위,곧 민족주의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 있다. 廣瀨進, 1936, 「間島及東邊道地方に於ける鮮農の特殊性－在滿鮮農の社會的諸條件(二)」, 『滿鐵調査月報』 16-9.

24) 1908년 9월에 통감부간도파출소가 발한 <간도한국신민규칙>에서는 재주 한국신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적을 상실할 수 없다(제8조)고 규정했다. 1910년 7월 내각에서 제정한 <일한합병처리법안>에 의하면 조선인 국제법상의 지위에 관해서는 조선인의 대우는 특별법령 혹은 조관에서 따로 규정한 외에 그 지위는 내지인과 완전히 같다.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간도협약에서 간도협약에서 규정한 지위를 여전히 향유한다. 외국에 귀화하여 이중국적을 가진 자는 일본의 국적법이 조선에 적용되기 이전에는 여전히 일본신민으로 본다. 姜龍范・崔永哲, 1999, 「'日韓合併'與間島朝鮮人的國籍問題」, 『東疆學刊』 16-4, 9~10쪽.

중국 정부는 국적법에서 규정한 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선인의 입적을 허가해 주었다. 중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간민교육회(후에 간민회)를 설립해서 조선인의 자치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조선인의 자치는 민족자치가 아니라 지역 자치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 중국 지방 당국은 거주연한에 달하지 않은 사람(5년 이상)에게도 귀화원을 수리해 주었는데, 1915년 9월까지는 간도 전체를 통해 귀화한 자가 약 2,560명으로 추정되었다. 1917년 9월까지 조선인중 귀화증서를 수령하고 정식으로 귀화를 한 호수는 1,104호이고, 출원 중 가귀화증서를 가진 호수가 1,955호였다.[26] 1919년 일부 지방에서의 조선인의 귀화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1919년 현재 귀화호 비율을 보면 혼춘이 20%(4,474호 중 1,025호), 왕청이 20%(2,846호 중 575호), 화룡이 3%(13,458호 중 417호), 밀산이 2%(157호 중 3호)였다.[27]

조선인의 귀화로 조선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다시 '귀화 조선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조선인 귀화 제한 정책으로 전환했다.

---

25) 정지호, 2008,「민국시기 동북지역 조선인의 법적 지위」,『중국학보』58, 286쪽.

26) 백영훈, 2002a,「滿洲朝鮮人の國籍問題と法的地位」,『明治大學大學院文學研究論集』16, 104쪽, 백영훈, 2002b, 間島協約と朝鮮人の國籍」,『東アジア研究』34, 62~63쪽. 이 시기 조선인의 참정권을 살펴보자. 혼춘청관내에서는 상당한 부동산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치발역복한 경우에는 참정권을 인정해 주었으며, 신해혁명 직후 국가와 성 양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혼춘청정부가 상당한 자산을 가진 귀화한 조선인으로 선거자격을 가진 30여명의 선거인 명부를 길림성선거총감독에게 보냈다. 1917년 제정된 길림성 화룡현공서입적간장 제7조에 의하면, 귀화한 조선인은 상하급 자치 직원이 될 수 있고 현립 학교교장 및 교원이 될 수 있고, 본 현의 행정기관의 직원에 임명될 수 있으며, 본 현에 토지 자산을 가진 자는 그 소유권을 확정한다고 했다. 秋憲樹 編, 1975,『資料 韓國獨立運動 4』下, 연세대학교출판부, 1475쪽; 정지호, 앞의 글, 286쪽. 1918년 2월 6일에 발포한 연길현의 길림성의회 선거와 관련한 포고(조헌병기 39호)에서는 현내 선거 자격자가 중국인 184명, 귀화조선인 54명이었다. 백영훈, 2002b, 앞의 글, 64쪽. 1918년 12월 30일에 용정촌 순경국장이 개최하는 망연회에 귀화조선인 8명을 초청하여 귀화입적에 반대하는 일부 조선인이 일본인의 시설에 속하는 조선인거류민회에 가입하는 사정을 지적하면서, 원래 국적법은 귀화입적 10년 이상자에게 선거권을 주고, 20년 이상자에게 피선거권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여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간도정부는 명망이 있는 조선인을 판사원으로 각지에 배치하고 조선인의 교육 및 지방 행정을 보조하게 했다.

27) 고영일 외, 2002,『중국항일전쟁과 조선민족』, 백암, 64~65쪽.

1920년 길림성 정부는 '조선인 귀화를 제한하는 훈령'을 발하여, 귀화 조건으로 국적법의 귀화조건을 준수함과 아울러 귀화 신청기간 동안에 위법행위를 했을 시에는 즉시 귀화를 취소하고 추방하며, 귀화 후 2년 내에 중국 방식에 따라 모든 관습을 바꿔야 한다는 등 귀화조건을 강화하였다.[28]

1923년 1월 20일부터 3일간 조선총독이 조선총독부관계자와 만주 각지 영사관의 영사를 초청하여 만주와 조선에 관한 당면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만주의 조선인의 국적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였다. 이 토의에서는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봉천총영사, 만철주식회사 이사, 하얼빈총영사, 길림총영사대리 등이 국적상실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간도총영사(귀화자는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 중 70%는 일본국적으로 벗어나고 싶지 않으며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지 않지만 토지소유권을 얻어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귀화를 하고 있는 상황), 요양영사, 안동영사, 장춘영사, 정가둔영사, 포조총영사대리 부영사, 통화영사분관주임, 해룡영사분관주임 등이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29]

1920년대 중반까지 조선인의 귀화율은 높지 않았다. 1925년의 귀화 상황을 살펴보면, 길림이 13.5%(12,570명 중 1,700명), 액목이 13.9%(3,596명 중 500명), 돈화가 28.3%(3,535명 중 1,000명), 연길이 4.2%(197,600명 중 8,350명), 왕청이 8.4%(72,508명 중 6,100명), 영안이 1.7%(5,954명 중 100명)였다.[30] 이를 보면 길림성 내에서 간도 이외의 지역에서 귀화율이 더 높았고, 아직 영안을 포함하는 북부 지역은 귀화율이 높지 않았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1925년 간도 조선인의 귀화율을 보면 화룡현이 5,610명, 연길현이 4,727명, 왕청현이 1,406명, 훈춘현이 12,451명으로 훈춘현이 가장 높았다(末松吉次 ; 李盛煥). 이는 간도협약이 혼춘에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혼춘의 조선인의 경우에는 중국국적을 취득해야 간도 잡거지의

28) 楊昭全・李鐵環 編, 1992,『東北地區朝鮮人革命鬪爭資料匯編』, 遼寧民族出版社, 74~75쪽 ; 정지호, 앞의 글, 293쪽.
29) 金正柱 編, 1971,「在滿洲朝鮮關係領事館打合會議報告」,『朝鮮統治史料』8. 宗高書房 ; 정지호, 앞의 글, 289~292쪽.
30) 鐵道省, 1928,『滿洲ニ於ケル鐵道ト在滿朝鮮人』, 27쪽.

www.kci.go.kr

조선인과 같은 정도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927년의 조선인 귀화율을 보면 봉천성이 270명으로 0.09%, 길림성이 37,470명으로 7.2%, 흑룡강성이 740명으로 0.5%였다. 전체적으로는 38,480명으로 4.7%에 달했다.[31] 1928년 간도 및 길회연선 조선인의 귀화율을 보면, 길림은 1,700명으로 7.4%, 액목은 500명으로 13.9%, 돈화는 1,000명으로 28.3%, 연길은 8,350명으로 4.2%, 왕청은 6,100명으로 8.4%, 영안은 100명으로 1.7%였다(연길과 왕청은 영사관 조사에 기초해서 실사한 것이므로 비교적 확실하다).

조선인의 귀화율이 낮았던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위의 지역별 귀화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도협약이 지켜진다고 하면 사실 간도의 조선인은 관공리가 되려고만 하지 않으면 굳이 귀화할 필요가 없었다. 귀화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시민권을 누릴 수 있었고, 조선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문화적 시민권도 거의 확보하고 있었다. 간도는 조선의 연장(제2의 조선)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간도가 일본의 만주 침략의 또 다른 교두보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간도의 조선인을 귀화시키려고 했다. 그 수단은 간도협약대로 하지 않고 귀화를 한 사람에게만 토지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다(1919년 귀화율이 특히 낮았던 화룡현의 경우에는 귀화를 하든 하지 않든 토지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인이 중국에 귀화를 하든 하지 않든 일본의 국적을 상실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선인은 귀화를 하는 경우에도 '이중국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

31) 東亞經濟調査局 編, 1932,『滿蒙政治經濟提要』(改造社版『經濟學全集』第25卷, 517쪽 ; 李盛煥, 1991,『近代東アジアの政治力學』, 錦正社, 346쪽. 1926년 봉천성 정부는 동변도에서의 조선인의 귀화를 제한했다. "조선인이 지방 치안을 문란시키는 일이 빈번하고 동변도는 조선과 인접해 있으므로 특히 조선인의 입국에 주의를 요한다. 귀 도윤은 관할 각 현지사에게 금후 조선인의 중국 입적을 금지시키고 이로써 불량분자로 인해 중일 교섭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926년 8월 화룡현에서는 귀화 조선인에 대해, 조선인 민회 탈퇴, 일본 국적 탈퇴, 귀화하지 않은 자라도 조선인민회 회비 납부 금지, 중국 국적이 없이 토지를 소유한 자는 귀화 수속을 밟고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토지 몰수, 엄벌에 처함 등의 지시를 내렸다. 朝鮮總督府警務局, 1974,『在滿鮮人ト支那官憲』, 成進文化社 ; 정지호, 앞의 글, 293쪽.

간도총영사관의 조사 통계에 의하면, 1928년 2월까지의 간도 4현에서의 귀화자의 비율은 호수로는 14.4%(63,499호 중 9.164호), 인구로는 13.8%(382,014명 중 52,739명)이었다. 간도 4현의 사례에서 귀화조선인은 다음과 같은 네 부류에 속하였다. ① 배일 사상(민족주의자)을 가지고 충심으로 중국 국민이 되려고 하는 자(1.4%), ② 이주의 연한이 오래 되어 풍습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귀화한 자(1.4%), ③ 정치적 위험사상(공산주의자)을 가지고 있거나 귀화로부터 특별히 편리를 얻을 수 있는 자(1.4%), ④ 토지소유권 확보 혹은 기타 수단으로 편의상 귀화한 자(9.8%). 이를 보면 토지소유권 등과 같은 편의를 구하고자 귀화한 경우가 전체 귀화의 80%에 달한다.

반면에 귀화자하지 않은 자는 또 다음과 같은 두 부류가 있었다. ① 일본 관헌의 보호를 신뢰하는 것이 유리한 자(8.6%), ② 무산계급 등이어서 귀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68.8%), ③ 이해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귀화하지 않으려는 자(8.6%). 귀화하지 않는 부류 가운데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산계급의 경우는 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중국측에서도 환영을 하지 않는데, 만약 중국측이 귀화를 강요하면 입적할 수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다시 조선에 귀국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일본영사관측에서는 이들이 향후 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일본측의 보호가 철저하지 않고 중국측도 거의 대차가 없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귀화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32] 이들 간도의 조선인 농민 대부분은 지방주인제(전민제도)에서 '佃民'의 신분에 놓여 있었다.[33]

일본은 1916년 미국에서의 일본인 이민 문제로 인해서 국적법을 개정하여 일본인의 본국적 이탈을 승인하였고 1924년에 다시 개정하여 국적이탈 원칙을 더욱 명확하게 했지만, 이 개정 국적법은 조선, 중국, 러시아 등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만주의 조선인에게는 국적 이탈이 허가되

32) 백영훈, 2002b, 앞의 글, 65쪽.

33) 千壽山・洪景蓮, 1995, 「九一八事變前東北三省朝鮮人的入籍狀況」, 崔洪彬 編, 『朝鮮族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www.kci.go.kr

지 않았다.[34] 만주의 조선인으로서는 일본 정부가 미국의 일본인에게는 미국으로부터의 배척을 이유로 국적 이탈을 허용했듯이 중국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는 만주의 조선인에게도 국적 이탈을 허용해달라는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

1928년 1월에 전만주 조선인대회가 개최되어 조선인의 중국국적 취득에 대해서 논의했다. 찬성파는 일본의 국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일본인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반대파는 중국에 귀화해도 중국관헌이 조선인을 자국민과 같이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35] 찬성파는 특히 일본 관헌의 세력이 희박한 오지에 있는 동포는 일본이이라고 해서 중국측의 반감을 사서 학대를 받는 사실을 지적했다. 찬성파는 길림・장춘(길림 서부와 중부) 등 만주 북부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고, 반대파는 봉천・안동을 중심으로 남만주의 만철연선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었다. 이는 조차지와 철도부속지에서 일본 세력이 강하고, 만주 북부에서는 중국 세력이 강함을 반영한 것이었다. 전만조선인대회는 상설기관 설치 등을 결의하고, 봉천성정부공서, 재만주일본관헌기관, 조선총독부에 인원을 파견하여 진정을 하기로 했다.[36]

1928년 길림성 정부는 조선인 귀화자는 조선인민회 및 동류의 단체에서 탈퇴, 일본측이 경영하는 금융기관 탈퇴, 중국 현립 학교 입학, 중국 의복 착용 등을 규정했다.[37] 1929년 2월에 중국 정부가 새로운 국적법을 공포하여 본국적 이탈 조항을 폐지하였다. 이에 찬성파에 속하는 1927년에 설립된 '귀화한족동향회'는 1929년 2월에 최동오 간사장 등을 남경국민정부에 파견하여 입적수수료 감액 등을 요구했다. 1929년 4월에는 동삼성 귀화조선인 대표단이 국민정부에 "조선인은 일본의 노예가 되길 원하지 않으며, 중

34) 백영훈, 2002a, 앞의 글, 103쪽.
35) 『間島新報』 1931. 8. 6 ; 백영훈, 2002b, 앞의 글, 69쪽.
36) (백영훈, 2002a, 앞의 글, 110쪽.
37) 1928년 재만조선인 중 귀화자가 30%로 추정된다. 滿洲帝國協和會中央本部調査部, 1943, 『國內に於ける鮮系國民實態』鮮系國民實態』, 13쪽.

www.kci.go.kr

국 국적을 취득해 중국 국민이 되길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첨부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귀화한 조선인은 요녕성 1만 명, 길림성 10만 명, 흑룡강성 1만 명으로 약 9%에 달하였다.[38] 조선인대표단은 귀화한족동향회 설립을 허가하여 행정사무를 보조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하였다. 중국 정부는 동향회의 설립은 불허하였지만 조선인 구축령을 완화하여 6개월 이내에 귀화수속을 밟고, 귀화수수료도 종래 12원에서 10원으로 경감시켜 주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의 1인당 평균 생활비가 1년에 70원 정도였으므로 10원은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다. 봉천성 당국은 귀화를 희망하는 조선인은 먼저 일본 내무성에서 발행하는 출적증명서를 원서와 함께 제출하게 했다. 이는 봉천성이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을 나타낸다. 동삼성 대표단은 1929년 5월 국민정부에 다시 진성서를 보내, 현재 동삼성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90%에 해당하며 극소수의 과격 공산혁명주의자와 극소수의 친일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민중지도이념의 하나로, "간척사업에 종사하여 자급자족사회를 만든다. 당국의 주의와 정강에 따라 국민교육 및 군사훈련을 진흥한다"라고 하여, 조선인 민족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였다.[39]

1929년 3월 길림성 정부는 조선인의 귀화를 제한하는 훈령을 발하여, 귀화 조건으로 3년 이상 거주, 조선 또는 러시아 적을 둔 자 제외, 귀화증서를 가진 자로서 조선 또는 러시아 이주자는 귀화증서 반납, 귀화증서를 가진 자로서 조선 또는 러시아 적을 가진 자로 판명될 때는 귀화증서 회수 등을 규정했다. 1929년 8월 길림성 주석은 훈령을 내려 조선인의 귀화를 허용하지 말고, 조선인에게 토지소유권을 허락하지 말라고 했다. 1930년 5월 간도 4개 현에서는 이미 귀화한 자라고 해도, 삼민주의에 반대하는 자, 친일 행동을 하는 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 일본의 간첩이거나 의심이 가는 자, 일본의 침략 정책에 편의를 제공한 자, 국토를 도매하거나 도매하려는

www.kci.go.kr

38) 楊昭全・李鐵環, 앞의 책, 98~99쪽 ; 정지호, 앞의 글, 294쪽.
39) 楊昭全・李鐵環, 앞의 책 ; 정지호, 앞의 글, 294~295쪽.

자 등에 대해서는 귀화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발하였다.[40]

전만조선인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은 간도의 사정을 보자. 간도의 18개 민회장이 참가한 회의(간혼18개처선인민회장연합회의)는에서는 일본 정부에 교육, 산업, 의료 등 제 시설을 완비해 줄 것과 상당한 행정비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적(일본 국적 포기)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2년 1월 봉천에서 자치 특별행정구를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는 당초 간도 조선인민회가 연합회 참가가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간도의 독립, 간도자치운동, 간도특별행정구역화 등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요구는 1934년 10월에 간도 지역이 길림성에서 간도성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41]

이러한 조선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이에 1928년 4월 외무성을 중심으로 척무성, 관동청, 조선총독부 등이 재만조선인문제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기초안>을 제출했다. <기초안>은 만몽조약을 관철하고 상조권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정부에 조선인의 토지 이용권을 인정시키고 일본은 중국에 경찰권, 과세권, 토지에 관한 소송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국적법을 조선에 시행하여 만주에서 치외법권을 철폐하고 만주 내지를 조선인과 일본에게 개방시킬 것 등을 결정했다.[42]

일본의 각 영사관에서의 조사한 내용과 이와 관련되는 주장을 살펴보자. 치치하얼영사관을 조사에 의하면 1929년 10월까지 재류조선인 9,148명 가운데서 2,333명이 귀화를 하여 귀화율이 26%에 달하였다. 그런데 귀화에 대한 의향이 농민과 시가지거주 상인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농민은 토지의 소유권을 획득하고 중국측의 압박을 면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얻기 위해 귀화를 희망했다. 그리고 귀화한 자 중에는 그 사실을 숨기고 일본 신민이라고 칭하고, 일본측에 접근하여 보호를 구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상인의 경우는 거의가 아편 등을 취급하는 부정업자에 속하여 일본 관헌의 보호

40) 朝鮮總督府警務局, 앞의 책 ; 정지호, 앞의 글, 293~294쪽.
41) 滿鐵調査課, 『滿蒙事情』 105 (1930. 6. 2), 811~813쪽 ; 백영훈, 2002a, 앞의 글, 109쪽, 87쪽, 93쪽.
42) 백영훈, 2002a, 앞의 글, 110쪽.

www.kci.go.kr

를 받는 것이 이익이었으므로 귀화에 관해서는 극히 냉담하고 거의 귀화를 희망하지 않았다.[43]

길림총영사관의 1929년 조사에서는 관내 거주 조선인의 귀화율이 14%에 달하였다(17,665명 중 2,395명). 귀화의 유형을 보면 중국측의 일방적 귀화(일부 불령자 및 공산주의선인을 포함)와 합법적 귀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는 일본의 국적법 시행을 구하고 합법적으로 중국에 귀화하려고 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중국적에 의한 편리를 향유하는 점에서 귀화를 하려는 사람도 있었다.[44] 장춘을 보면 찬성론은 주로 지식층이었고, 반대론은 중국은 완전한 법치국가가 아니고 정국도 불안정하며 가렴주구가 많으므로 차라리 일본관헌의 보호를 받는 것이 득책이라고 주장했다. 관동청 관내에서도 토지의 상조와 소작권을 위해 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귀화임의설)과 오지 조선인은 일본과 관계를 끊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중국과 관계를 끊으면 바로 전 생활이 근본적으로 파괴된다는 주장(귀화지당설)이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 조선인의 시민권의 정도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오지의 조선인이 시민권이 가장 취약했고 따라서 중국 국적 취득의 실익이 가장 컸다. 치치하얼의 귀화율이 가장 높았던 것이 이를 반영한다. 그런데 간도총영사는 간도는 만주의 다른 지방과는 달리 귀화에 상관없이 실제로 조선인은 토지소유권을 획득하고 있고, 이중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고, 만약 조선인의 귀화를 인정해 주면 1921년 이래 거대한 국폐를 투입하여 확장해온 간혼지방의 경찰서가 점차 그 기능을 잃을 것이고, 조선인의 지원지도기관인 민회, 학교, 병원, 금융부 기타 시설도 점차 그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적 이탈을 반대하였다. 하얼빈영사는 귀화를 승인하는 것이 조선인의 불만, 불평을 수습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귀화를 통해서 조선인의 생활이 안정될 것이고 외교교섭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정부의 조선인 정책도 문제가 있었다. 1930년 2월 내정부가 <국적

www.kci.go.kr

43) 백영훈, 2002a, 앞의 글, 113~114쪽.
44) 백영훈, 2002a, 앞의 글, 103~115쪽.

취득자제한해제심사규칙>을 공포하여, 국적법 제9조의 국적 취득 및 그에 부수하는 처와 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한을 해제하였다. 이 해제 대상은 만5년 거주이고 부수 입적의 처자는 만 10년이었다. 이렇게 하여 조선인의 입적 및 법적 지위가 개선되었다. 1930년 3월에 개최된 동삼성행정회의에서 조선인조사기관으로서 교민조사처를 설립하여, 부처장에 조선인 2명을 임명하고 조선인의 입적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1930년 5월 중앙정부가 길림성정부에게 비밀통첩을 하달하여(내정부는 주일본중국공사에게 이 사실을 비밀리에 보고를 했다), 일본정부가 귀화를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조선인의 귀화 출원에 대한 심사를 엄중히 하고(귀화청원자의 거주연한이 법정연한에 달하였가, 보증인이 가공의 인물이 아닌가, 법적 자격을 갖추었는가, 평소 행위가 어떠한가 등), 제한적 방침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귀화조선인에게는 토지소유권 및 각종 산업의 특권, 공민권을 부여하고, 구장・촌장 등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인정한다. 귀화조선인의 자녀는 중국의 교육을 받고 중국의 의복을 착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방침은 1880년대 처음 청이 간도의 조선인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과 같았다.

1930년 4월에 길림성정부주석이 국적취득자의 참정권 문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해서, 귀화조선인에게 부여해야 할 각종 권리의무의 제한 방법, 불령조선인의 권리 취득과 행사 가능성에 대한 방지책 강구, 귀화조선인에게 부여하는 권리 의무 내에 길림성에 적합하지 않는 조항 해제 방법 등을 토의했다. 본회의의 결정은 길림성민정청의 토의를 거쳐, 제27회 성위원회의에 회부하여, 공민권 제한의 대상을 길림성에서도 조선인이 가장 집중해 있는 간도에 한정한다고 결정하고, 본건을 내정부에 송부하여 재가를 구했다. 이에 대해 내정부는 연변(간도) 각 현은 중국인과 조선인(원문은 화한)이 잡거하고 점차 주객 전도의 경향이 있다. 이에 기초하여 길림성정부는 1930년부터 시작되는 간도의 각 현 행정제도 개혁에서, 화룡현, 훈춘현의 구장후보자 10명을 중국인으로 결정하고, 조선인을 구장후보에서 제명했다. 이에 간

www.kci.go.kr

도에서는 연길현, 혼춘, 국자가 등지를 중심으로 하여 귀화조선인에 의한 참정권운동이 전개되었다.[45]

중국 정부가 1929년 국적법 개정으로 조선인이 일본 국적 이탈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귀화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한 이유 중에는 조선인이 귀화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가 조선인의 귀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거나(사실상의 친일파), 그리고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이 활동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거나(사실상의 친소파), 만약 중국 정부가 조선인의 귀화를 쉽게 받아들여 준다고 하면 조선인의 이민자의 수가 급증할 것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 4. 만주국과 조선인

만주국 성립 이후 조선인 문제의 핵심이었던 국적 문제는 다시 만주국인과 일본제국 신민이라는 문제로 변용되어 나타났다. 조선인 시민권 문제는 만주국 수립으로 모두 해결되었다. 이제 조선인은 적어도 법률상 만주국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렸다. 그러나 민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인은 국적은 일본인이었지만 민족은 여전히 일본족(內地人)에 대해서 조선족(半島人)이었다. 이 민족의 차별도 조선내지에서 불어닥친 '내선일체' 관념으로 인해서 조선족이 아니라 '日界' 일본인에 대해서 '鮮界' 일본인으로 되었다(일선이 아니라 내선으로 되었다).

1920년대 후반 조선인이 벗어나고자 했던 '조선인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 만주국의 수립은 중국 정부가 우려했던 조선인을 첨병으로 하는 일본의 만주 침략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1931년 10월에 봉천에서 설

www.kci.go.kr

45) 백영훈, 2002a, 앞의 글, 113~120쪽.

립된 조선인민회연합회는 1933년 관동군이 발포한 <재만조선인지도방안>에서 조선인 민회를 연락·통제하는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민회연합회는 가맹 민회의 회비(3,000원)와 함께 외무성으로부터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었다. 민회연합회는 만주국에서 조선인의 사실상의 지방자치행정기관의 역할을 했다. 민회연합회는 1933년 3월에 월보를 창간하여 1937년 11월 해산할 때까지 56호를 발행하였다. 1933년 3월 조선총독부로부터 농업장려비를 보조 받아 부업 장려와 같은 산업제일주의운동을 전개하였다. 설립 당시 가맹 민회 수는 13개소였던 것이 1934년에 95개소, 해산 당시의 1937년 11월에는 125개소에 달했다.[46]

조선인의 지위를 둘러싸고,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취급할 것인가, 만주국인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했다. 국적으로만 보면 조선인은 당연히 일본인으로 취급되어야 했지만, 만약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취급하게 되면 민족협화라는 관점에서, 특히 중국인의 불만을 살 것이 뻔했다. 1920년대 후반 조선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만주국에서의 조선인의 지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에 만주국 통치의 관점에서 관동군은 치외법권을 철폐하기로 하고, 조선인의 지위를 만주국인과 동등한 지위로 조정하려고 했다. 이제 치외법권 철폐를 둘러싸고 '조선인 문제'가 다시 나타났다.

1935년 12월에 대만사무국 관계자와 현지위원회(1935년 2월 설치)간의 검토회의에서 결정한 <행정권처리요강>에서는 조선인의 지위를 조약상으로는 일본인과 동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타민족과 평등하고 그 취급방법에 대해서는 양해 사항에서 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104). 이는 조선총독부의 조선인도 일본신민이라는 기본 방침과는 다른 것이었다. 1936년 8월 관동군사령부가 발표한 <재만조선인지도요강>에서는 조선인이 만주국의 중요한 구성분자임을 강조하였다. 조선인민회를 협화회에 통합시키고, 조선인에

www.kci.go.kr

46) 申奎燮, 2002,「帝國日本の民族政策と在滿朝鮮人」, 東京道立大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93~94쪽, 97쪽.

대한 조선총독부의 권한은 만주국(관동군사령관 겸 전권대사를 통해)에 이행하고(조선인민회의 행정기능이 만주국 행정기능에 흡수), 구 동북정권 시대의 폭정에 대한 반동적 관념과 일부의 잘못된 우월감을 억제하고, 민족협화의 건국정신에 철저하게 하여, 국내의 치안유지에 임하면서 점차 국방의 책무를 진다라고 하였다. 만주국국무원총무청이 1936년 10월 22일에 <재만조선인지도요강설명>을 작성하고, 같은 달 29일 도문에서 열린 남조선총독과 관동군사령관과의 회담에서 이 문서를 합의하였다.[47] 이것은 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를 초래하는 치외법권 철폐를 전제로 하는 만주국('민족협화') 우위의 원칙이 관철된 것이다.

그런데 중일전쟁 후 조선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재만조선인의 지위는 다시 변동을 겪게 되었다. 1939년 초에 내선일체의 근본 취지를 만주국의 조선인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것은 1938년 2월에 공포된 칙령 제95호 <육군특별지원병령>을 만주의 조선인에게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만조선인에게도 창씨개명이 실시되면서 이제 이름으로만 보아서는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48] 조선에서 창씨개명은 1939년 11월에 제령 제1호 <조선민사령개정의 건>, 제령 제20호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이 공포되어 1940년 2월에 실시되었다. 도시에서 조선인의 지위 문제는 배급제도에서 노출되었는데, 창씨개명 후에도 중국인 인조장은 조선인을 일본인과 차별하려고 했다. 그는 배급물자를 타는 서류의 이름 기입란에 조선인이 기입한 일본명에 대해 새 씨명 외에 본래의 조선명을 기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배급관계에서 선계와 일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조선인은 법적으로는 일본인이라고 해도,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의무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화 정도에서 차이가 있고 풍속 습관 역시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요컨대 선계는 아직 선계라고

47) 위의 글, 105쪽.

48) 1940년 12월 4일 현재 거주지별 창씨개명 신고율은 조선내(호구수는 4,123,646)는 76.7%, 일본(호구수는 192,318)은 14.0%, 만주(호구수는 214,522)는 17.9%, 중국(호구수는 13,980)은 14.0%이었다. 위의 글, 197쪽.

www.kci.go.kr

주장했다.[49] 이에 조선인에게는 창씨개명무용론이 나왔다.

중국인 인조장의 반발은 민족협화와 내선일체의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1942년 5월에 조선인에게도 징병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게 되면서부터는 내선일체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50] 1942년 8월에 조선총독부와 만주국간에 제2차 선만협정이 체결되어 '만선일여'의 방침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조선에서의 징병제 등의 재만조선인에게로의 적용과 관련하여, 만주측에서는 내선일체의 조선통치의 근본 방침을 존중하여 이에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만주국 정부가 내선일체를 민족협화보다 우선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51]

협화회본부장은 1942년 6월 국민총력조선연맹과 협화회의 제휴를 강화하고 <조선지도방침>을 협의하기 위해 조선을 방문하였다(만선일보 1942년 6월 3일, 18일). 협화회는 동아공영권내에서 조선이 점하는 지위와 조선에서의 황민화 정책에 관해 인식을 고쳤다. 복합민족국가인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재만조선인에 대한 황국신민화에 소극적 또는 반대했던 협화회가 협화회의 지도방침으로서 황군신민의식을 고양하고, 충량한 일본인으로 연성을 강화하는 방침으로 변경했다. 이는 곧 '만선일여'를 매개로 해서 '내선일체'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52]

1932년 9월에 만주국과 일본이 체결한 <일만의정서>에서 "만주국영역에 있어서 일본국 또는 일본제국신민이 종래 일본과 중국 간의 조약·협정 및 기타의 공사협정에 있는 일체의 권리와 이익을 확인하고 존중한다"라는

---

49) 위의 글, 184~185쪽.

50) 재만조선인의 유지는 징병제시행축하선서식을 열고, 감사문을 일본정부 및 조선총독부에 보냈다. 위의 글, 185쪽.

51) 宋漢鏞, 1997,「滿洲國における朝鮮人統治政策－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の分析を中心に」,『日本植民地硏究』9, 111쪽.

52)『滿鮮日報』, 1942년 6월 21일. 1942년 5월 일본각의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공포, 1944년부터 징집, 타국에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재외조선인에게도 징병제를 적용한다고 결정했다.『滿鮮日報』, 1942년 5월 14일, 16일. 1942년 11월에 재만조선인징병제실행준비위원회를 설립했다. 1944년 4월 1일, 8월 20일, 관동군에 의해 제1회 징병검사를 실시했다. 수험자총수는 15,363명이었다. 예정적령자의 전원이 수험에 참가해서 갑종합격자는 5,777명, 제1을 이하 제3을까지는 8,149명, 병종 이하 무종까지는 1,436명이었다. 위의 글, 116쪽.

규정에 의해서 만몽(정확하게는 남만주와 동부내몽고)에서의 일본의 특수권익이 승인되게 되었다. 문언으로만 해석하면 북만주에서는 일본인은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1932년 3월에 <상조권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 관한 법령>(교령 제3호), 1933년 3월에 <일본인토지상조임시방법>를 발하였다. 일련의 행정명령을 종합하면 토지상조권은 3성 외에도, 북만특별구, 신경과 하얼빈특별시, 그리고 1932년 12월 신성제 시행 후에 설치한 흥안 각 성과 열하성의 대부분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53]

상조권은 시행세칙에서 사실상 토지소유권으로 취급하였다. 상조에는 장기상조와 단기상조로 구분하고 전자는 상조기간을 20년(국유지는 30년)으로 하고 무조건 경신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영구조권으로 사실상 토지소유권에 상당하며, 단기상조는 상조기간이 3년 이내로서 토지임차권에 상당하였다.[54] 이렇게 해서 일본인은 만주국 전국에서 농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데 어떠한 불리한 점도 없었다.[55] 이것이 만주국이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였음을 나타낸다.

동성특별구가 북만특별구로 만주국의 일부가 된 반면에, 만철부속지는 여전히 만주국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일본이 만주국을 승인한 마당에 치외법권을 철폐하지 않을 명분이 사라지게 되어, 1937년 결국 치외법권을 철폐하고 만철부속지의 행정권을 만주국에 이양하게 되었다. 치외법권을 철폐한 후에 만철부속지를 만주국특별구로 할 생각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북만특별구와 마찬가지로 부속지 내 각 도시는 자치를 누릴 수 있었다.[56] 그러나

53) 재정부・민정부가 발한 <일본인토지상조임시방법>에서는 이 법령의 적용 범위를 봉천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하였다. 이외의 토지상조 관련 법령으로는 1933년 3월에 발한 <일본인토지상조의 종지 및 부정당취득금지방법>, 같은 해 4월에 사법부가 발한 <일본인토지상조권설정등기에 관한 문건>, 같은 해 6월에 발한 <잠행상조권등기법>, <동시행세칙>, <상조집조발급규칙>, <상조집조의 취급에 관한 계약수속문건>, <양도에 의해 만주국인의 상조권취득에 관한 문건> 등이 있었다. 1935, 「滿洲國成立後に於ける商租權」, 『滿鐵調査月報』15-8, 4쪽.

54) 中谷忠治, 1935, 『間島に於ける農業機構の概要(二)』, 『滿鐵調査月報』15-12, 71~74쪽.

55) 1934년 4월 만주국은 무적조선인에 대한 토지상조의 취득등기거절을 발표하고 재만조선인의 조선에의 호적등록을 강요하였다.

56) 野間清, 1934, 「滿鐵附屬地行政權の返還と滿洲國租稅制度竝に租稅負擔に就いて」, 『滿鐵調査月

북만철도의 매수로 북만특별구가 사라진 후에는 만주국특별구의 명분도 사라지게 되었다. 만주국 수립 후 동성특별구는 북만특별구로 개칭하였다가, 1935년 중국(만주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경영하던 북철을 만주국이 매수한 후에 이 북만특별구가 소멸되었다. 반면에 만철부속지는 1937년 치외법권이 철폐될 때까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남아 있었으며, 치외법권 철폐 후에도 신사, 병역, 교육 등 일부 행정권이 재만일본대사관의 관할로 남았다.

관동주는 사실상 조선과 같은 일본의 해외식민지('外地')의 하나였다. 만주국이 수립된 후에는 만철부속지가 관동주 관내에서 만주국 관내로 이전하게 되었다(치외법권 철폐가 예정되었다). 만주국 수립 이전부터 관동주에서 거주하던 중국인은 본지인(民籍)으로 만주국 수립 이후에 관동주에 이민을 온 외지인(寄留)과 구분하였다. 관동주 당국은 본지인들도 관동주인('州民')에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해 동화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만주국군('國兵')으로 징병하지 않고 경제상의 혜택을 주었다.

1932년말 현재 외무성동아국이 작성한 <민족별 거주지성질별 인구 상황>에서 거주지성질이라는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통상지(상부지), 잡거지, 미개방지, 부속지 등이었다. 미개방지 가운데 조선인이 거주하는 곳은 간도영사관내, 하얼빈영사관내, 치치하얼영사관내, 만주리영사관내, 적봉영사관내 등이 있었다. 간도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만몽조약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었다.[57]

---

報』14-1, 28쪽.

57) 간도영사관은 연길, 화룡, 왕청, 혼춘, 무송, 안도의 6개 현을 지칭한다. 무송, 안도는 봉천성에 속하므로 만몽조약에 의해서 모두 잡거지이다. 그리고 연길과 화룡도 간도협약에 의해서 모두 잡거지이고, 왕청현은 6개 사 가운데 1개 사(백초구가 있는 춘융사)만 잡거지였다. 혼춘은 상부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미개방지였지만, 혼춘분관은 조선인이 상부지에 4,804명, 잡거지에 44,159명이 있고, 미개방지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간도협약이 적용되어 이미 잡거지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왕청현의 미개방지 5개 사는 1932년말 통계에서는 향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국자가분관과 백초구분관에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국자가분관은 상부지와 잡거지에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백초구분관은 상부지에만 조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수는 7,414명이었다. 따라서 간도영사관의 미개방지는 백초구분관에 속하는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얼빈 등 중동철로

조선인의 영사관내별 분포 상황을 보면 간도는 상부지에 14,927명, 잡거지에 136,045명, 미개방지에 6,571명(합계 157,543명), 하얼빈에 상부지에 7,420명, 미개방지에 30,491명, 부속지에 3,255명(합계 41,166명), 치치하얼에 상부지에 580명, 미개방지에 13,843명, 부속지에 1,193명(합계 15,616명), 만주리에 상부지에 72명, 미개방지에 4명, 부속지에 125명(합계 73명), 적봉에 미개방지에 638명(합계 638명)이 거주하고 있었다.[58]

만주국 수립으로 재만조선인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관할권 다툼도 그리고 이로 인한 재만조선인의 이중 국적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1932년에는 그때까지 공표되지 않고 비밀협정 상태로 있던 '미쓰야협정'이 공표됨과 동시에 철폐되었다. 만주 전역에서 조선인은 '상조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간도의 조선인이 가지고 있던 특권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치외법권이 철폐되기 전에는 치외법권 지역인 만철부속지와 만주의 기타 지역(영사관관내)간의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1937년에는 치외법권도 철폐되어 사실상 만주의 전 지역이 하나의 주권(법권, 법역)으로 통일되게 되었다.

조선인에게는 더 이상 귀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59] 만주국에서 일본인의 지위가 중국인(만주국인)의 지위보다 높은 상황에서 조선인이 중국인이 될 필요는 없었다. 치외법권 철폐로 재만조선인도 만주국 국민으로 통합

---

연선은 잡거지가 설정되지 않아서 상부지, 미개방지, 중동철도부속지(행정구역으로는 동성특별구[만주국 수립 이후에는 북만특별구] 등을 이루고 있었다)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위 통계가 맞다고 하면 적봉영사관의 경우에는 미개방지에 거주하는 조선인 638명만을 관할하였다.

58) 外務省東亞局, 1933,『滿洲國及中華民國在留本邦人及外國人人口統計表・第二十六回』, 171~172쪽.

59) 조선인은 만주사변을 만주군벌의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인식하고, 일본 국적을 가지는 것의 실익을 체험하고 제국 신민의 긍지에 만족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외사과장에 보고에 의하면 "만주사변 이후 재만선인이 일본국신민인 특권만을 진회하고 교만한 태도를 나타내어 자중을 결하고 겸양을 잃고 불손폭만으로 다른 민족과 사이에 분쟁을 야기하기 때문에 비난기피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宋漢鏞, 앞의 글, 99~100쪽, 103쪽. 신경총영사관에 의하면 구동북정부 시대에는 토지소유를 위해 또는 압박배척을 면할 수단으로 또는 불령조선인이 귀화하는 예가 있었지만 만주국이 들어선 오늘에는 없다고 한다. 新京總領事館, 1933,『管內在住朝鮮人』, 68쪽.

한다고 하는 '관동군'의 정책('日滿一德一心', '滿鮮一如')이 추진되었지만, 결국 재만조선인은 만주국 국민이기보다는 일본제국 신민이라는 조선총독부의 정책('內鮮一體')이 관철되게 되었다. 이러한 재만조선인의 이중적 지위로 인해서 만주국에서는 <국적법>이 제정되지 못하였다. 대신에 1940년에 <임시민적법>을 제정하였고, 다시 <국병법>을 제정하였다. 임시민적법에서는 국적과는 무관하게 만주국의 민적에 등록할 수 있었지만, 재만조선인은 이미 조선총독부의 '호적령'에 따라 조선의 '호적'에 등록되어 있었다. 국병법에서는 조선인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만주국의 병역 의무(징집)에서 제외되었다(간도특설부대와 같이 지원병으로만 입대할 수 있었다). 조선인은 장차 일본의 병역법에 따라서 일본제국의 징집 대상이 될 것이었다. 이에 조선총독부의 관리가 만주에 파견되어 와서 조선총독부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무적자'를 취적시키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조선인의 지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조선인 이민의 규모를 들 수 있다. 1927년에서 1930년까지의 3년간 증가를 보면 1년 평균 16,313명이 증가한 데 대해서, 1933년에서 1936년까지의 3년간의 증가를 보면 1년 평균 80,712명이 증가했다.[60] 민족별 인구 증가 상황을 비교하면 조선인은 일본인 다음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1932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38년의 인구는 총 인구가 1.28배 증가했는데, 일본인은 3.65배, 조선인은 1.86배 증가했다.[61] 다음으로 1941년을 기준으로 1942년의 증가를 보면 천명당 증가율이 일본인은 79.2명, 조선인은 5.1.9명, 중국인은 27.4명이었다.[62] 원문은 중국인은 만인, 일본인은 일본인내지인, 조선인은 일본인조선인이다. 중국인의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산업5개년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노동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지역별 조선인의 인구 증가의 분포를 보자. 1933년을 기준으로 1935년까

60) 滿洲帝國協和會中央本部調査部, 앞의 책, 16쪽.
61) 宮川善造, 1941,『滿洲國の緣族複合狀態』, 新京 : 滿洲事情案內所, 54쪽.
62) 1942,『滿洲人口統計(民族別)』(滿鐵資料館分類記號 03203), 3쪽.

www.kci.go.kr

지의 인구 증가는 남만이 1.3배(248,387명)이고, 간도가 1.12배(453,345명), 북만이 1.65배(98,350명)이었다.[63] 1933년말 민족별 거주성질별 인구통계를 보면 일본인은 만주국에 194,896명, 관동주에 139,016명이 있었다. 만주국 내에서는 다시 만철부속지에 136,416명, 북만철도부속지에 2,515명, 부속지 외에 55,965명이 있었다. 조선인은 만주국에 671,535명, 관동주에 2,259명이 있었다. 만주국 내에서는 다시 만철부속지에 27,717명, 북만철도부속지에 7,578명, 부속지 외에 636,240명이 있었다.[64]

민정부조사과 조사에 의하면 1934년 말과 1942년 말 만주국 조선인 인구 662,862명(2.02), 1,540,583명(3.46)의 각 성별 분포를 살펴보자(괄호안은 비율%이다). 간도성이 438,297명(73.40), 622,227명(73.43), 봉천성이 69,545명(0.73), 139,069명(1.70), 안동성이 46,879명(1.69), 69,687명(2.96), 빈강성이 39,426명(0.94), 75,338명(1.71), 길림성이 29,884명(0.63), 169,311명(2.99), 삼강성이 15,204명(1.67), 38,554명(3.02), 하얼빈특별시가 7,245명(1.50), 용강성이 3,486명(0.16), 9,477명(0.45), 북만특별구가 2,595명(1.19), 신경특별시가 1,563명(1.07), 20.971명(3.70) 등이었다.[65]

1934년 6월말 현재 영사관관내별 조선인 인구의 분포를 보면 717,507명 중 간도에 168,482명, 안동에 66,086명, 봉천에 45,572명, 연길에 42,362명, 하얼빈에 35,102명, 통화에 32,316명, 길림에 14,586명, 신경에 12,617명, 신민부에 3,024명이었다.[66] 1935년 현재 조선인 인구의 분포는 관동주에 4,389명, 만철부속지에 32,081명, 영사관내에 797,831명이었다.[67] 조선인 인구의 대부분은 영사관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에 일본인은 만철부속지에 172,121명, 관동주에 163,715명, 영사관내에 145,034명이 거주하였다.

1934년말 만주국 통계에서는 관동국관내(관동주와 만철부속지) 인구가,[68]

63) 滿鐵產業部 編, 1937,『經濟年報(昭和十二年・上)』, 41쪽.
64) 外務省東亞局, 앞의 책, 1쪽.
65) 滿洲帝國民政部, 1935,「第一次統計年報」, 4~5쪽.
66) 在滿日本大使館, 1935,『在滿朝鮮人事情』, 136~137쪽.
67)『滿洲統計』1~11, 40쪽.
68) 1934년말 조선인의 분포를 보면 만주국에 118,754명, 만철부속지에 5,423명, 관동주에

www.kci.go.kr

1942년말 통계에서는 관동주가 포함되지 않았다. 1943년 당시에는 하얼빈특별시와 북만특별구는 이미 철폐되어 빈강성에 편입되어 있었다. 새로 만들어진 일부 성에서의 1942년 말 조선인 인구를 살펴보면 북안성이 36,255명(1.57), 동안성이 44,583명(7.13), 목단강성이 121,775명(18.60), 통화성이 95,389명(9.91)이었다. 북안, 동안, 목단강 3성은 '북변진흥계획'을 추진하면서, 통화성은 '동변도부흥계획'을 추진하면서 개발된 곳인데 이들 지역에서 조선인의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목단강성은 간도성 다음으로 조선인의 비율이 높았고, 특히 목단강시에서의 조선인 비율이 높아서 '제2의 간도'로 불릴만하였다.

이 시기 조선인 인구의 증가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도시 인구의 급증이었다. 조선인 4명 중 1명은 도시에 거주하였다. 1937년과 1943년간 조선인의 대도시에서의 인구 비율의 변동을 살펴보자. 봉천은 2.7%에서 4.1%로, 신경은 2.1%에서 3.3%(1942년에는 3.7%)로, 하얼빈은 1.0%에서 1.9%로 각각 증가하였다. 1942년말 이 세 도시의 조선인 인구는 봉천이 55,530명, 신경이 24,507명, 하얼빈이 14,492명으로 도합 94,529명에 달하였다.

또 하나 주목되는 현상으로는 조선인 인구의 간도성 집중률이 감소하였다. 1934년에는 조선인의 3분의 2가량이 간도성에 거주하였으나 1940년에는 40%대로 떨어졌다. 그리고 1934년에서 1940년까지의 간도성 각 현의 조선인 인구 증가 상황을 보면 왕청현이 39,907명에서 103,394명으로, 안도현이 3,058명에서 18,763명으로, 다른 현에 비해서 급속하게 증가했다.[69] 이 지역은 집단이민과 집합이민의 배치된 지역이었다.

만주국 시기에 조선인 이민의 한 종류로 '개척민'이 있었다. 개척민은 이전과는 달리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개간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 농민 또는 조선인 농민이 이미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시장가격보다 더 싼 값(하나의 예를 들면 시장가격의 3분의 1)으로 구매하여 농장, 부락을 건설하였다.

499명이 있었다. 國務院總務聽統計處, 1935, 『滿洲帝國人口統計』, 6쪽, 25쪽.

69) 滿洲帝國民政部, 1935, 「第一次統計年報」, 8~9쪽.

www.kci.go.kr

이 과정에서 조선인이 수혜자였는지 피해자였는지 해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1936년 8월 만주국이 발표한 <재만조선인지도요강>에서는 동변도와 간도 지구 23개 현을 조선인 개척민 신규입식 지구로 정식으로 확정했다(194). 1938년에 <선농취급요강>을 제정하여 신규입식을 규정한 23개 현 제한을 취소하고, 조선 개척민의 이주 범위를 확대했다.[70]

집단개척민은 1937년에 12,951명, 1938년에 14,427명, 1939년 5월 1일 현재 31,416명으로 총계가 48,794명이었다(389). 1938년 7월에 집단 개척민, 집합개척민, 집결개척민, 자경농개척민, 안전농장, 분산개척민 등을 집단, 집합, 분산으로 재분류하였다. 집단이민은 주로 간도 3개 현에 배치했다.[71] 1937년에는 전체 2,478명 중 2,280명을 1938년에는 2,854명 중 1,824명을, 1939년은 3,920명 중 1,070명을 간도 3개 현에 배치했다(9.260명 중 5,178명, 조선사정, 1939 : 81). 또 다른 자료를 보면 1939년까지 집단이민 입식 상황을 보면 전체 49,600명 중 간도성에 26,950명, 통화성에 4,470명, 길림성에 6,472명, 목단강성에 5,124명, 이외에 빈강성, 용강성, 금주성, 북안성, 봉천성 등에 걸쳐 있었다. 논 농사에는 2정보, 밭 농사에는 4정보의 토지를 주었다(1940, 208 : 214). 토지비, 주택건설비, 영농자금 등 건설 수요 경비를 일본 금융기관이 빌려주고 개간한 토지에서 수확하여 20년간 분할 상환의 형식으로 갚게 했다. 1940년까지 만선회사가 조선인 집합이민을 신경, 봉천, 연길, 목단강 각 지점과 북안건설사무소를 통해 64.260명을 입식했다.[72]

---

70) 孫春日, 2003,『'滿洲國'時期朝鮮開拓民硏究』, 延邊大學出版社, 176쪽.

71) 1936년부터 1943년까지 간도에 이주해 온 일본개척단은 16개단, 896호(원래 계획 호수는 2,170호였다), 3,706명이었다. 연길현에 일본인 개척지가 110헥타르이고, 동척과 만척지가 2,025헥타르에 달했다. 이 토지는 농민들에게 사들인 것인데 토지 가격은 시장 가격의 3분의 1 밖에 되지 않았다). 1941년 8월에 식량 공출제를 실시했다. 위의 책, 100쪽.

72) 1936년 1월에 조선인농업개척민에 관한 방침을 확립하고, 신규 입식 조성기관으로 1936년 6월 칙령 제97호로 만선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1936년 9월에 경성에서 선만척식주식회사, 신경에 만선척식고분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집단이민은 총독부, 만주국 및 선만척, 만선척이 원조 알선하여, 여비, 경지, 자금, 가옥 등을 공사가 준비하고 장래 자작농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고, 집합이민은 기이주자의 연고초입으로 토지만 선척이 준비하고, 소작농으로 하는 것이고, 분산이민은 연고자이지만 선척의 관여는 하지 않는

집합 개척민은 1939년부터 실시된 이민 형태로서 규모가 비교적 적고, 만선회사가 입식지 선정을 책임지는 외에는 나머지는 만주국이 지방 금융회에 지도와 원조를 위탁해서 실시했다. 만주국의 지정 요구에 따라 각 도에 인원을 할당해서 입식했다. 이들은 수속비와 여비를 부담해야 했다.[73] 만주국 개척총국의 조사를 거쳐 1938년부터 1940년 3년간 이주증을 가지고 중조변경 관구를 통과한 분산개척민은 6,775호, 24,912명이었다.[74] 이들 분산 이민에 대해서는 만주국 개척총국이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만선회사는 원칙상 거의 간섭할 수 없었다.[75]

이러한 종류는 일본개척민과 같았다. 일본개척민은 또한 연초개척민, 임업개척민, 자경촌개척민(철로안전보호의 개척단), 어업개척민(삼하성 하천어업 위주), 보급창개척민(제1선에서 보급창 공작을 하는 개척단),[76] 마산개척민(우량마 생산), 이주공창개척민(실업노동자), 대륙귀농개척민, 개척여숙(청소년의용군 배우자, 1941년 창설), 만주건설근로봉사대(1939년 창설) 등 여러 형식의 특수개척민이 있었다.[77] 일본은 집단개척민, 집합개척민, 철도자경촌, 청년의용대 등으로 1938년도는 22,001명, 1940년도는 59,288명에 달했다. 제9차(1939~40년)

---

다. 이민의 훈련은 집단과 집합이민은 조선 및 만주에서 행한다. 입식 호수 매년 1만호 산정은 남선을 주로 하는 과잉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 매년 1만호 입식을 예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30개년 20만호를 목표로 했다. 집단이민의 1939년도 할당 호수는 3,000호이고, 각 도 할당비율은 충북 15%, 충남 10%, 전북 20%, 전남 15%, 경북 25%, 경남 10%, 강원 5%였다. 지도원조지역은 간도 및 동변도 23개 현으로 이외 집결지로서 개원, 철령, 서안, 서풍, 영길, 액목, 돈화, 쌍양, 회덕, 서란, 화전, 영안(목단강), 수화(빈강), 태동, 도남(용강), 통료(흥안남) 등의 제현이다. 위의 책, 68쪽, 389쪽.

73) 高見成, 1941, 『鮮滿拓植株式會社・滿鮮拓植株式會社5年史』, 滿鮮拓植株式會社(滿洲移民關係資料集成 12, 不二出版社, 1990), 71~72쪽 ; 孫春日, 앞의 책, 216쪽.

74) 1940년부터 조선총독부가 신의주, 만포진, 혜산진, 상삼봉, 남양, 등지에 관구를 설치하고, 만주국이 안동, 집안, 임강, 도문, 개산둔 등지에 개척총국판사처를 설치했다. 당지 경찰서가 이주증명서를 거주증명서로 교환해 주었다. 高見成, 앞의 책, 80쪽 ; 孫春日, 앞의 책, 223~224쪽.

75) 위의 책, 210쪽, 217쪽.

76) '제1선'이라는 것은 일본이 소련과의 국경 지대에 토치카 진지를 구축하면서 최전방 군사시설을 구축한 지방을 말한다. 다시 제2선과 제3선이 있었다. 제2선은 후방이고 제3선은 후방의 후방이었다. 제3선에 일본 개척민이 주로 배치되었다.

77) 孫春日, 앞의 책, 217쪽.

집단개척단 101단의 배치된 지역을 보면 북안성에 28개, 삼강성에 23개, 용강성에 16개, 빈강성에 13개, 목단강성에 10개, 길림성에 6개, 동안성에 5개단이었다. 북안성, 삼강성, 용강성, 목단강성 등 동북부 군사 요새 지역의 '제3선'에 많이 배치된 것이 특징적이었다. 최전방의 경우에는 조선인 이민이 후방으로 재이주를 하고 대신에 일본인 이민이 배치되기도 했다.

조선인 농업 이민 중에는 또한 집단부락과 안전농촌이 있었다. 1936년 6월말 <집단부락 성별 호구 일람>을 보면 간도, 봉천, 흥안남, 용강, 빈강, 삼강에 36개 부락, 8,579호, 39,165명이었다. 안전농촌은 조선인 농민의 자작농창정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농촌으로 당초 이재민의 수용구제를 위해 1932년 이래 동아권업주식회사가 총독부, 관동군, 만철 및 만주국정부의 원조 아래 건설한 것을 선척의 설립과 함께 인계한 것이다. 철령농촌, 영구농촌, 하동농촌(주하), 수화농촌, 삼원포농촌(유하현) 등이 있었다(2,400호, 11,000명). 1938년 7월 이후 이민 정책이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흑룡강성으로의 이민을 장려하고 논 개발을 서둘러 전쟁 수요에 대비하려고 했다. 1938년 목릉현에 조선인 이민이 266호, 1,490명에 달했다. 1940년에 흑룡강성 조선인 인구는 153,357명이었다.[78]

## 5. 결론

심양 인근 마을에서 중국공산당 간부로 활동했던 조선인 노인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몇 가지 사실에 놀랐다. 하나는 그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1940년대 전반기, 조선인들이 매우 가난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은 학교에서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였던 일, 만일 조선어를 사용하면 벌점을 받고, 체벌을 받은 일을 식민지 교육으로서 기억하고 있었다.[79] 두 번

www.kci.go.kr

78) 위의 책, 90쪽, 388쪽.

79) 조선에서의 국어보급운동과 병행하여 재만조선인에서도 일본어의 보급 및 생활화운동이

째로는 마을에 있던 조선인들이 해방 직후에 대부분 마을을 떠났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은 중국인의 눈에 조선인이 '얼구이즈', 곧 '제2일본인'으로 비쳤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심양으로 빠져나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다시는 마을에 돌아오지 않았다. 셋째는 중국공산당원으로서 매우 열심히 중국공산당의 방침에 따라 일을 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그를 중국공산당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게 했을까? 만주국 시기에 조선인으로서의 삶과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의 조선인의 삶이 무엇이 달랐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만주국 시기의 조선인의 삶에 대한 대답을 필요로 한다. 이 글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썼다. 1931년과 동일한 일이 1946년(토지개혁)에 발생한 것인지 궁금하다. 만주국에서 조선인이 중국인과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에 실현되었다. 국민당은 1928년의 조선인 구축과 유사하게 조선인을 '한교'라고 해서 송환(추방)했다. 이 두 시기 사이의 변화는 1931년 이후의 조선인의 간도에서의 항일빨치산 투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1928년 조선인들이 중국 국적 취득을 주장하면서 조선인이 중국 혁명에 참가하여(국민혁명) 일본제국주의와 싸우겠다는 주장과 유사하다.

이 글에서는 조선인의 시민권을 조선인의 독립운동(혁명운동), 친일 또는 친중 자치운동과 관련해서 살펴보지는 못했다. 일본에서 고등관에 합격하여 만주국 감남현에서 참사관(부성장과 동급)으로 근무했던 김규민의 회고에 의하면 보통의 중국인들은 한국인을 한거이닌, '차유세닝'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꺼울리빵즈'라고 부르는 일이 더 많았다. 그것은 조선인이 비참한 사람이 많으니까 '거지'라는 뜻으로 빵즈라고 낮추어 부른 것이다.[80] 소만국경 일선에는 일본 사람 개척단을 배치하고 그 다음이 한국 사람 개척단을 배치했다. 개척단이 들어오면 만주척식회사가 그 개척단지를 사서 거기다가

---

전개되었다. 봉천시에서는 선계보도분과위원회의 지도의 하에서 각 가정에의 국어보급운동을 실시했다. 신규섭, 185쪽).

80) 중국인이 조선인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그것은 '얼구이즈(二鬼子)'였다. '일본인 앞잡이'라는 뜻이다.

www.kci.go.kr

집, 수로, 도로 등 건설했다. 세금은 물납 형식으로 받아서 군량미로 조달했다. 개척단은 일종의 자치단체였고, 완전히 '특혜 농촌'이었다. 감남현 정부에는 일본 사람이 한 50명에 조선인이 셋으로 조선인이 1할 정도 있었다. 김규민의 초봉은 230원이었다.[81]

만주국의 조선인은 이전 시기에 중국 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이중의 국가의 지배를 받았듯이, 만주국과 조선총독부의 이중의 지배를 받았다. 그런데 이 지배는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도가 높았다. 이것은 조선인 무적자의 '취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82] 조선인은 무엇보다도 병사 관계와 관련되어 취적이 필요했다. 만주국에서는 1940년 4월 <국병법>이 제정되자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으로서 동년 8월에 <임시민적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임시민적법이 시행되는 동년 10월 1일에 <임시국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선인은 1922년에 공포된 <조선호적령>에 따라 취적을 하여야 했으나, 재만조선인의 3분의 1 이상이 무적자였다. 조선인은 조선총독부와 만주국에 이중적으로 취적(본적이 조선과 만주에 이중적으로 설정)해야 했다.

1942년 5월에 조선인에게도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인 동년 9월에 조선총독부가 <朝鮮寄留令>과 <조선기류수속규칙>을 공포하여, 본적이 아닌 곳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없거나 불명인 자가 90일 이상 일정의 장소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기류자'로서 기류부에 등재해야 했다. 만주국의 조선인의 경우에는 만주국의 민적부와 조선총독부의 기류부가 연계해서 작성되었다. 이는 물론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83]

만주국의 외국인은 1941년 8월에 공포된 <외국인입국체재취체규칙>에 따라 治安部로부터 엄중한 단속을 받았다. 물론 이 외국인의 범주에 일본인

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1999,『격동기 지식인의 세 가지 삶의 모습』, 28~33쪽.
82) 1940년 국세조사에서 조사된 재만조선인의 수는 1,450,384며이었는데, 1939년 10월 현재 재만무적조선인의 수는 581,060명(107,259호)이었다. 遠藤正敬, 2010,「滿洲國の身分證明と'日本臣民':戶籍法, 民籍法, 寄留法連繫體制」,『アヅア硏究』56-3, 4쪽, 6쪽.
83) 일본에서는 1914년에 <기류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은 조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과 조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이러한 외국인을 '제3국인'이라고 한다). 만주국에서도 1943년 2월에 <기류법>을 제정하였다. 84)만주국 전국에서 3,600개의 관계기관으로부터 43만 명의 담당사무자를 동원한 결과, 1944년 1월 시점에서 길림성에서는 1943년 중에 50만 건 정도의 사무처리가 이루어져 민적이 거의 정비되기에 이르렀다.85)

조선인은 취적을 통해서 점차 국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 상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국가'는 혼란스러웠다. 만주국, 조선총독부, 일본제국이 중첩되어 있었다. 만주국에서 조선인은 완전한 만주국 인민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한 일본제국의 신민도 아니었다. 조선인은 여전히 '본적'에 의해서 일본내지인(日界)과는 구분되는 조선반도인(鮮界)이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은 조선인의 정체성과 경험을 또한 복합적으로 만들었다.

만주국의 조선인은 만주국 이전 시기와는 달리 중국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사실상 누리면서, 다시 조선총독부의 추가적인 후원을 받은 점에서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이 혜택은 만주국 이전 시기는 '보충적'이었다고 하면 만주국 시기에는 '영여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만주국에서 조선인이 가졌던 혜택과 비용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인 동시에 만주국이 일본인 식민지라는 이중적 식민지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 이중성으로 인해서 만주국의 조선인은 이중화되었다. 이 점에서 만주국의 조선인의 삶은 하나의 식민지 상황에만 처한 일본인과 중국인의 삶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투고일 : 2012년 5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2년 5월 31일

84) 위의 글, 8쪽.

85) 『滿洲日日新聞』, 1994년 1월 17일자. 신경시에서는 '국도의 유령인구 박멸'을 목적으로 수도경찰청이 1943년 2월 10일에서 24일까지 호구조사와 주요물자구매통장을 일제히 조회한 결과 7만명 정도의 유령인구를 발견하였다. 이에 신경시의 실제인구는 55만명이 아니라 63만명에 달하였다. 『만주일일신문』, 1943년 2월 24일자 ; 위의 글, 7~8쪽.

# 참고문헌

## 1. 국문

고영일 외, 2002,『중국항일전쟁과 조선민족』, 백암.
김석주・남설봉, 2008,「연변지역 농업의 변화에 관한 연구」,『한국지역지리학회지』14-2.
김희곤, 1983,「한국유일독립당촉성회에 대한 일고찰－중국내지 제1차 국공합작의 시도」,『한국학보』33.
리광인, 2007,『겨레 항일지사들 1・2』, 민족출판사.
밀산조선족백년사 편찬위원회,『밀산조선족백년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7.
박 환, 1991,『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송한용, 2001,「일본과 장학량의 철도교섭」,『용봉논총』.
송한용, 2006,「동북군벌의 철도정책」,『역사학연구』27.
楊昭全・李鐵環, 1992,『東北地區朝鮮人革命鬪爭資料匯編』, 요녕민족출판사.
연수현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등편, 2005,『연수현조선족100년사』, 민족출판사.
유병호, 1992,「1920년대 중기 남만주에서의 자치와 공화정체－정의부와 참의부의 항일근거지를 중심으로」,『역사비평』17.
유병호,「재만한인의 국적문제에 대한 연구－1900년대초 한・청 양국의 갈등을 중심으로」,『사림』18.
윤병석 외, 1997,『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전원옥, 1975,「재만항일독립운동단체의 전민족유일당운동」,『백산학보』19.
정지호, 2008,「민국시기 동북지역 조선인의 법적 지위」,『중국학보』58.
秋憲樹 編, 1975,『資料 韓國獨立運動 4』下, 연세대학교출판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99,『격동기 지식인의 세 가지 삶의 모습』.
홍종필, 1995,『'만주사변' 이후 조선총독부가 간도지방에 설치한 집단부락에 대하여』, 명지사론.
황민호, 1988,「만주지역 민족유일당운동에 관한 연구－유일당촉성회의를 중심으로」,『숭실사학』4.

## 2. 중문

姜龍范・崔永哲, 1999,「'日韓合併'與間島朝鮮人的國籍問題」,『東疆學刊』16-4.
김득순・최성춘 편역, 2007, 중공동만특위문헌자료집(하), 연변인민출판사.
박경수, 1987, 연변농업경제사, 연변인민출판사.

上海市政協文史資料委員會 外 合編, 1992, 列强在中國的租界, 中國文史出版社.
孫春日, 2003, '滿洲國'時期朝鮮開拓民硏究, 延邊大學出版社.
孫春日, 2009, 中國朝鮮族移民史, 中華書局.
孫春日, 해방전동북조선족토지관계사연구(하), 길림인민출판사.
楊昭全・孫玉梅 主編, 1994, 『中朝邊界沿革及界務交涉史料匯編』, 吉林文史出版社.
정협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위원회 편, 2007, 연변문사자료휘집 1, 연변인민출판사.
周艾民, 2004, 『「東方馬其諾防線」大揭秘 : 侵華日軍僞滿洲國境要塞群實錄』, 中央編譯出版社.
千壽山・洪景蓮, 1995, 九一八事變前東北三省朝鮮人的入籍狀況, 崔洪彬 編, 朝鮮族硏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 3. 일문

高見成, 1941, 『鮮滿拓植株式會社・滿鮮拓植株式會社5年史』, 滿鮮拓植株式會社(滿洲移民關係資料集成 12, 不二出版社).
古賀元吉, 1933, 支那及滿洲における治外法權及領事裁判權, 日支問題硏究會.
廣瀨進, 1936, 間島及東邊道地方に於ける鮮農の特殊性 – 在滿鮮農の社會的諸條件(一), 滿鐵調査月報 16-8.
廣瀨進, 1936, 間島及東邊道地方に於ける鮮農の特殊性 – 在滿鮮農の社會的諸條件(一), 滿鐵調査月報 16-9.
國務院總務廳統計處, 1935, 『滿洲帝國人口統計』.
宮川善造, 1941, 『滿洲國の緣族複合狀態』, 新京, 滿洲事情案內所.
金正柱 編, 在滿洲朝鮮關係領事館打合會議報告, 朝鮮統治史料 8.
金正明 編, 1966, 朝鮮獨立運動史, 5, 東京 : 原書房.
大阪經濟法科大學間島史料硏究會, 1999, 在間島日本總領事館文書, 大阪經濟法科大學アジア硏究所.
東亞經濟調査局 編, 1932, 『滿蒙政治經濟提要』(改造社版 『經濟學全集』 第25卷).
滿洲國通信社, 1941, 滿洲開拓年鑑.
滿洲移民史硏究會 編, 1976, 日本帝國主義下の朝鮮移民. 龍溪書舍.
滿洲帝國民政部, 1935, 「第一次統計年報」.
滿洲帝國協和會, 1943, 『國內に於ける鮮系國民實態』鮮系國民實態.
滿鐵產業部 編, 1937, 『經濟年報(昭和十二年・上)』.
末松吉次, 『南北滿洲及西比佰利亞地方在住朝鮮人ニ關スル調査』.
白榮勳, 2002a, 滿洲朝鮮人の國籍問題と法的地位, 明治大學大學院文學硏究論集 16.
白榮勳, 2002b, 間島協約と朝鮮人の國籍, 東アジア硏究 34.

www.kci.go.kr

白榮勳, 2005, 東アジア政治・外交史研究：‘間島協約’と裁判管轄權, 大阪經濟法科大學出版部.
副島昭一, 1993, 滿洲國統治と治外法權撤廢. 山本有造 編. 滿洲國の研究.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小峰和夫, 1999(1991), 滿洲：起源·植民·覇權, 御茶の水書房.
松葉秀文, 1936, 滿洲國國籍問題の一考察, 滿鐵調査月報 16-5.
松村高夫, 1970,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滿洲への朝鮮人移民について. 三田學會雜誌 63-6.
宋漢鏞, 1997, 滿洲國における朝鮮人統治政策－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の分析を中心に. 日本植民地研究 9.
外務省, 1934, 在滿朝鮮人概況.
李盛煥, 1991, 近代東アジアの政治力學, 錦正社.
日本防衛廳戰史室 編, 1935, 滿洲國史, 在滿日本大使館, 在滿朝鮮人概況.
田中隆一, 1996, 對立と統合の鮮滿關係－內鮮一體・五族協和・鮮滿一如の諸相. ヒストリア 152.
朝鮮總督府, 1936, 間島集團部落.
朝鮮總督府警務局, 1974, 在滿鮮人ト支那官憲, 成進文化社.
中谷忠治, 1935, 間島に於ける農業機構の概要(二), 滿鐵調査月報 15-12.
中谷忠治, 1935, 間島に於ける農業機構の概要(一), 滿鐵調査月報 15-11.
淺野豊美, 1999, 蛋氣樓に消えた獨立－滿洲國の條約改正と國籍法. 近代日本文化論 2 日本人の自己認識. 岩波書店.
淺野豊美, 1998, 滿洲國における治外法權と國籍法. 涉澤研究 11.
淺田喬二・小林英夫, 日本帝國主義在中國東北的統治,
鐵道省, 1928. 11,『滿洲ニ於ケル鐵道ト在滿朝鮮人』.
許壽童, 2002,「日本の在滿朝鮮人教育政策 1932~1937－間島の朝鮮人私立學校を中心に」.『一橋研究』 27-2.

www.kci.go.kr

■ Abstract ■

# The Koreans in Manchuguo : Between Diaspora and Colonilalism

Lee, Dong-Jin

Manchuria of the early 20th century was the Balkan Peninsula of the East Asia. Taking advantage of the weakened China, Russia the continental power and Japan the maritime force came into conflict over Manchuria. Since the Russo-Japanese War, the two countries had divided their dominance in the region by south and north, and blocked the intervention of the United States. This situation, however, changed when the Russian Revolution weakened the control of Russia over the territory, increasing the influence of the U.S. instead, and the rising nationalism among the Chinese threatened the vested rights of the Japanese. As the central Chinese government, having succeeded in the 'North Extension(or Unification),' tried to extend its power to Manchuria, Japan staged the 'Manchurian incident' and set up 'Manchuguo.' Japanese occupation of the region resulted in the rising status for the Koreans living there, who had been harshly trea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on the account that they were the tools of Japan and Russia. For the Koreans were the Japanese under the law. Since the Japanese did not recognize the Korean's renunciation of nationality, they could still consider those Koreans who had acquired Chinese nationality as Japanese. This made the Koreans seen, to the eyes of the Chinese, as the advance guard or tools of the Japan's invasion of Manchuria; this was 'the problem of the Koreans.'

This problem twisted with the emergence of Manchuguo; the problem was solved as for the Koreans, but the Chinese could not accept it. Legally speaking, Manchuguo was a state not a colony, hence the Chinese as its people could

www.kci.go.kr

hardly embrace the fact that they were put in the inferior status to the Koreans who wer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is caused conflicts over the status of the Koreans in Manchuria between the Gwandong Army an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Yet, as the Koreans of Manchuguo like those in the Korea Peninsula had become the subject of the draft, they were less regulated by the 'oneness of Manchuria and Japan' or the 'oneness of Manchuria and Korea' policies (National harmony) than the 'oneness of Korea and Japan' policy. As a result, the Koreans in the region could enjoy the status similar to that of the Japanese ('the second-class citizen' or 'the second Japanese'). This shows that the korean diaspora in Manchuria included 'colonial' element as 'the problem of the Koreans' was influenced by the geopolitical factor of Manchuria ('the problem of Manchuria').

www.kci.go.kr

Key words : the problem of Manhuria, the problem of the Koreans, Manchuguo, the Koreans, National harmony, Oneness of Korea and Japan, double colonization